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프랑스 총재정부기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김민철

프랑스 총재정부기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지도교수 최갑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김민철

김민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원장 한정숙 (인)

부위원장 최갑수 (인)

위원 주경철 (인)

국문초록

기존 정치사상사 서술은 프랑스혁명을 ‘인민주권론’과 ‘대의제 정부론’이라는 두 편으로 가른다. 18세기 말까지 ‘민주주의’란 곧 소국의 직접민주주의였고, 대국에서 ‘대의제 정부’는 가능할지언정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존 서술은 이런 이분을 극복한 개념화 및 정치사상이 19세기 중엽이 지난 뒤에야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서술이 일반화된 것은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사이에 낀 1795~1799년 총재정부기를 보잘 것 없는 시대로 치부하여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총재정부기에 공화국의 안정적 민주화를 도모했던 ‘신자코뱅’의 지도적 이론가였던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천착한다. 그것은 상술한 이분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으며, 혁명 전반기의 인민주권론 및 시에에스가 주창했던 대의제 정부와 모두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의 절충을 추구했다. 그것은 구체제와 “공포정치”를 모두 피해야 한다는 강박이 전제된 혁명 후반기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다.

앙토넬은 인민주권과 권리의 평등을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제시하면서, 평등한 자들로 구성된 ‘인민’이 주권을 갖고 보통선거를 시행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민주국가를 구상했다. 특히 대의제를 전제하면서도 민주적 인민주권의 본질을 입법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법률 자체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에서 찾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의 구상을 분석함으로써 총재정부기 자코뱅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대안을 가늠해볼 수 있고, 프랑스혁명의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앙토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혁명기 민주주의와 대의제 담론의 다양한 변형체들을 전유해서 총재정부기 신자코뱅주의를 주도한 이론적 구축물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앙토넬을 당대의 사건 및 사상의 전개 양상이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켜, 그의 혁명적 경험을 통해 그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논문의 본론은 먼저 프랑스혁명의 격랑 속 ‘민주과 귀족’ 앙토넬의 삶이 어떤 형태의 독특함을 지녔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혁명기에 전개된 인민주권론과 대의제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따라감으로써, 앙토넬이 파리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정치사상의 고민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토대 위에서 숙성된 앙토넬의 구상이 총재정부기에 어떤 형태로 인민주권론과 대의제를 결합시켰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이 지닌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뚜렷하게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급박한 이론적 타협으로서, 공포정치로 돌아가지도 않고 바뵈프의 공산주의적 기획을 따르지도 않는 동시에 보수화하는 혁명의 활력을 되살려내고 공화국을 민주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과 불가분으로 연결된 채로 형성되고 다듬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이론으로서 상당한 깊이와 뼈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교화 작업을 거친다면 혁명기 다른 헌법들에 뒤지지 않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인민주권, 보통선거, 법적·정치적 평등, 자유로운 회합 및 결사, 언론의 자유, 보편적 공교육으로 구성된 앙토넬의 ‘민주공화국’ 기획의 향적은 제2공화정의 ‘민주사회파’와 제3공화정의 ‘급진공화파’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 그의 기획은 혁명기 ‘대의제 정부론’과 보통선거를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19세기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 인민에게 입법 과정 통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대의민주주의’의 원류로 자리매김할 만하다.

게다가 오늘날 정적인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대의제의 문제를 단순히 엘리트의 지배 또는 직접민주주의 중 한 쪽을 요구함으로써 타결할 수 없는 만큼, 주권과 입법과정의 관계에 대한 앙토넬의 고찰은 다시 음미해볼 만하다.

주요어 : 프랑스혁명, 총재정부, 앙토넬, 민주주의, 대의제, 인민주권
학 번 : 2011-20055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1 |
| 제 2 장 ‘민주파 귀족’ 앙토넬 | 8 |
| 제 3 장 혁명기 인민주권과 대의제의 갈등 | 20 |
| 제 1 절 인민주권과 민주주의 | 20 |
| 제 2 절 대의제 | 24 |
| 제 4 장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 35 |
| 제 1 절 “대의민주주의”의 원칙 | 36 |
| 제 2 절 국가와 사회의 체계 | 40 |
| 제 3 절 민주성을 보장하는 장치 | 47 |
| 제 5 장 결론 | 54 |
| 참고문헌 | 58 |
| Résumé | 67 |

I. 서론

프랑스혁명은 미국혁명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8세기의 “민주혁명”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모습은 21세기의 그것과 달랐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형태는 종교·양심·표현·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성인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해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선출하며, 그 대표들이 국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이때 ‘민주주의(démocratie)’는 ‘대의(représentation)’에 불가분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18세기에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대의’의 개념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양자는 역사적 경험과 혁명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결합되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는 정치사상사 서술은 프랑스혁명기를 논할 때 이분구도를 취한다. 한편에는 혁명력 2년의 경험과 루소 Jean-Jacques Rousseau,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 마라 Jean-Paul Marat에서 기인하는 민중적이고 직접민주주의적인 함의를 갖는 ‘인민주권론’이 있다. 그리고 다른 편에는 민중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근대적 상업 공화국의 정신을 체현하며 시에예스 Emmanuel Joseph Sieyès로 대표되는 ‘대의제 정부론’이 있다. 이 때 ‘대의’는 필요악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기제로서 제시됐다. 이런 이분을 극복한 개념화 및 정치사상은 대체로 19세기 중엽이 지난 뒤에야 등장했다고 서술된다.¹⁾

1) 이 이분구도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 Pierre Manent, *Cours familier de philosophie politique* (Paris: Gallimard, 2004) ; Bernard Manin, *Principes du gouvernement représentatif* (Paris: Flammarion, 2008); Pierre Rosanvallon, *La démocratie inachevée: histoire de la souveraineté du peuple en France* (Paris: Gallimard, 2000)이 있다.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용에 대해서는 최갑수, 「서양의 민주주의 - 이념과 변용」, 제55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속의 민주주의’ (한국과학기술원, 2012년 10월 26일) 발표문과 P. Rosanvallon, “L’histoire du mot démocratie à l’époque moderne”, Marcel Gauchet, Pierre Manent & P. Rosanvallon (dir.), *Situations de la démocratie* (Paris:

그런데 위 이분구도를 수용한 역사서술은 18세기 말에 이미 그것을 극복하려 했던 중요한 한 사상적 조류를 간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술이 일반화된 것이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 사이에 낀 총재정부기를 보잘 것 없는 시대로 치부해왔기 때문은 아닌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혁명의 후반부^{1795~1799년}에 정치사상의 풍부한 변주들이 등장했고, 상술한 이분을 극복하려는 유의미한 시도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전반부^{1789~1794년}에서 바로 19세기 초의 자유주의로 눈을 돌리게 되면 그것들을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다.

기존 혁명사 서술에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발발부터 ‘공포정치^{la Terreur}’까지의 시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옛 교과서들은 정통해석과 수정해석을 가리지 않고 1795~1799년 총재정부기에 대한 서술을 한 문단으로 같음하곤 했다. 기존 해석이 총재정부를 간과한 이유는 그것을 모순투성이인 헌법과 협소한 지지기반에 의지해서 오른쪽의 왕당파와 왼쪽의 민주파를 막아내기 위해 친위쿠데타와 군대에 기대서 길지 않은 생명을 불안하게 이어나갔던 초라한 체제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총재정부는 우파가 볼 때는 국내외의 위기관리에 무능한 정부였고, 좌파가 볼 때는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정부였다. 정치적으로 총재들은 잦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사람들은 혁명에 지지하고 평화를 갈망했다. 군대는 대불동맹에 맞서 연이어 승리했다. 내치의 지지부진함을 전쟁이 보충했다. 장군들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그래서 혁명력 5년 숙월 18일, 혁명력 6년 화월 22일, 혁명력 7년 목월 30일과 같은 쿠데타 혹은 위기가 잇따랐고, 결국 혁명력 8년 무월 18~19일에 의회는 보나파르트 장군에게 권력을 쥐어주었다.)

Seuil-Gallimard, 1993), pp. 11~29를 참조하라. 정치적 ‘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Hanna F.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과 Mónica B. Vieira & David Runciman, *Representation* (Cambridge: Polity, 2008)을 참조하라.

2) 이런 해석의 줄기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총재정부기를 간과하는 역사 이해는 혁명기 정치사상의 역사를 이분구도로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혁명의 폭과 깊이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사실 총재정부는 공포정치로도 구체제으로도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나름의 “중용의 길 *la voie d'un juste milieu*”을 모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재정부기의 정치담론은 혁명전반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풍부한 정치사상의 실험장이었다. 그 시기에 위 이분을 넘어서는 “대의민주주의 *démocratie représentative*” 구상이 다듬어졌는데, 이는 19세기의 자유주의적 ‘대의제’ 정치사상에 주목한 로장발롱 *Pierre Rosanvallon*을 비롯한 정치사상사자들이 ‘프랑스혁명이 내놓지 못했던 해답’이라고 주장해 온 바로 그것이다.³⁾

Lynn Hunt, David Lansky & Paul Hanson, “The Failure of the Liberal Republic in France, 1795~1799: The Road to Brumaire”, T. C. W. Blanning (ed.), *The Rise and Fall of the French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485~492; Florence Gauthier, *Triomphe et mort du droit naturel en Révolution: 1789~1795~1802*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The French Revolution: Revolu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Mike Haynes & Jim Wolfreys (ed.), *History and Revolution* (London: Verso, 2007); Howard G. Brown,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violence, justice, and repression from the terror to Napoleon* (Charlottesville &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 3) 최근 들어 총재정부기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해졌는데, 새로운 해석은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이라는 개인들의 거대함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기존 역사서술이 총재정부가 시도했던 중도의 모색, 경제적 자유주의 실현, 행정체계 정비와 같은 성과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총재정부체제가 좌우로부터의 반대를 머뭇거리기 없이 분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부르주아지에 기반을 두었고, 나폴레옹의 제정이 구체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19세기 민주주의의 도약을 준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특히 세르나는 총재정부가 덕성의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공화국, 능력주의 공화국, 세속 공화국을 지향했으며, 그 시기가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주의 이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정치적 근대성의 실험장이었고 19세기의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준 다양한 사유들의 각축장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총재정부기를 “극중도 공화국 *république de l'extrême centre*”이라 칭하면서 제3공화정의 실질적 기원으로 본다. 공화국은 왕국과 달리 선결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총재정부가 공포정치와 부르봉 왕국 사이의 중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산으로 남긴 “질서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라는 두 모형의 대립이 근대 공화국의 한 전범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Michel Biard & Pascal Dupuy, *La Révolution française: Dynamiques, influences, débats 1787~1804* (Paris:

이 구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혁명기 ‘대의’와 ‘민주주의’의 용례를 알 필요가 있다. 18세기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 뒤에 제한형용사가 붙는 경우가 드물었다. 서로 대립하던 ‘대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대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은 1777년 미국의 해밀턴 Alexander Hamilton이 최초로 사용했고, 콩도르세 Nicolas de Condorcet가 1790년 8월에 프랑스에서 사용했지만, 이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또 프랑스에서 1790년 9월에 라비콩트리 Louis-Charles de Lavicomterie가 ‘대의된 민주주의 *démocratie représenté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대국을 통치할 방법을 가리킨 것일 뿐, 이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곧 직접민주주의였고, 대국에서 ‘대의제 정부’는 가능할지언정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⁴⁾

그러나 총재정부를 되살려내면 바로 그 시기에 이 같은 이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앙토넬 Pierre-Antoine d'Antonelle de Saint-Léger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총재정부 초기부터 앙토넬

Armand Colin, 2004), pp. 105~109; Bernard Gainot, *1799, un nouveau Jacobinism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une alternative à brumaire* (Paris: CTHS, 2001); James Livesey, *Making Democracy in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 13, 238~239; Colin Lucas, “The First Directory and the Rule of Law”,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0, No. 2 (Autumn, 1977), pp. 231~260; “The Rules of the Game in Local Politics under the Directory”,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6, No. 2 (Autumn, 1989), pp. 345~371; Martyn Lyons, *France Under the Direc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p. 2~18; Pierre Serna, *Antonelle: Aristocrate révolutionnaire 1747~1817* (Paris: Le Félin, 1997), pp. 241~243; *La république des girouettes* (Paris: Champ Vallon, 2005), pp. 308~312; “Français, encore un effort pour être républicains!”, M. Biard (dir.), *La Révolution française: une histoire toujours vivante* (Paris: Tallandier, 2009), pp. 65~79; “La République, une 《anomalie》... à construire”, *Conférence à la Maison Franco-Japonnaise*, le 28 septembre 2009, Working paper - Série C: Conférences. 새로운 해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소개는 최갑수, 「공화국, 공화주의, 프랑스」,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의 열정 : 공화국과 공화주의』 (아카넷, 2011), pp. 34~36을 참조하라.

4) Raymonde Monnier, *Républicanisme, Patriotisme et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Harmattan, 2005), pp. 48, 69~70.

은 ‘대의제 정부’와 ‘민주주의’의 대립을 우회해서 후자에 정초한 전자를 수립하는 동시에 전자 속에서 후자를 실현시킬 현실적 방안으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여기서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대의제라는 현실과 진정으로 화해할 단초를 얻었다.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은 부르봉 왕가의 구체제와 혁명력 2년의 경험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강박이 전제된 혁명 후반기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공포정치”와 “유산자 공화국 *république des possédants*”을 모두 피하면서 인민주권의 평화적인 실현가능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이론적 암중모색이었던 것이다. 그는 인민주권과 권리의 평등을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제시하면서 평등한 자들로 구성된 인민 *peuple*이 주권을 갖는 법치민주국가를 구상했다.⁵⁾ 이 구상은 혁명 전반기의 인민주권론 및 시에에스가 주창했던 대의제 정부 *gouvernement représentatif*와 모두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의 절충을 추구했다. 그것은 단일한 저서가 아니라 소책자들과 신문지면을 통해 단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종합에 이르렀다.

앙토넬은 200년이 넘는 혁명사 편찬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현재 파리 제1대학의 프랑스 혁명사 강좌 주임교수인 세르나 *Pierre Serna*가 『앙토넬 : 혁명적 귀족, 1747~1817』에서 앙토넬의 삶과 사상의 역동적인 노정을 보여주면서 그를 역사의 망각으로부터 되불러 왔다. 세르나가 드러내 보인 앙토넬의 모습은 귀족으로 태어나 출생 신분을 극복하고 급진적인 혁명가의 삶을 살면서 역사의 격변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표현해 혁명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던 참여지식인이다. 그런데 세르나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전기 傳記이기 때문에 그 초점이 앙토넬이라는 인물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인지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 이론을 필요한 부분에서 요약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충분

5) *Journal des Hommes Libres(JDHL)*, 혁명력 4년 화월 3일(1796년 4월 22일).

히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⁶⁾

총재정부기의 민주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단행본 규모의 연구로, 총재정부기 신자코뱅^{néo-Jacobins}의 성격과 활동을 잘 보여주는 분석적 연대기인 월로치^{Isser Woloch}의 『자코뱅의 유산』과 총재정부 마지막 1년 동안 신자코뱅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활동을 분석한 게노^{Bernard Gainot}의 『1799년, 새로운 자코뱅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연구자도 세르나처럼 신자코뱅주의^{néo-jacobinisme}가 자신의 정치이론으로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받아들이고 지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연구 역시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자체를 자세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총재정부 초기부터 게노가 진정한 “민주적 계기^{moment démocratique}”였다고 표현한 1798~1799년에 이르기까지 신자코뱅의 정치이론이었던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⁷⁾

이 글에서는 총재정부기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이 여러 선행 이론 및 당대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로써 총재정부 시기의 민주적 잠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프랑스혁명의 정치사상을 ‘불가능한 직접민주주의’와 ‘보수적인 대의제’로 이분하는 구도를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의 순서로는 먼저 혁명의 격랑 속 앙토넬의 삶이 어떤 형태의 독특함을 지녔는지 살펴본 다음에 인민주권론과 대의제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혁명기에 전개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앙토넬이 파리

6) P. Serna, *Antonelle*.

7) B. Gainot, “Un itinéraire démocratique post-thermidorien: Bernard Metge”, Christine Le Bozec & Eric Wauters (ed.), *Pour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hommage à Claude Mazauric* (Rouen: I.R.E.D. - C.R.H.C.T., 1998), p. 106; 1799; Isser Woloch, *Jacobin Legacy: The Democratic Movement Under the Directory*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정치사상의 고민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숙성된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이 총재정부기에 어떤 형태로 인민주권론과 대의제를 결합시켰는지 살펴보겠다.

Ⅱ. ‘민주파 귀족’ 앙토넬

아를 출신의 앙토넬 후작은 자유주의 귀족이라 불리는 오를레앙 공작, 라파예트, 미라보보다 더 급진적인 입장에서 혁명에 참여했고, 남성보통선거와 언론의 완전한 자유를 타협 없이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혁명적 경험 속의 앙토넬을 ‘민주파 귀족’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에 대한 전기적 정보는 각종 인명사전에 짝막하게 나오는 것뿐이라 전반적으로 피에르 세르나의 전기 서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마저도 앙토넬에 대한 사료가 풍부하지 않아서 앙토넬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상당부분 조심스러운 추측에 기댄다. 따라서 앙토넬의 삶을 그의 사상적 형성에 구체적으로 밀착시켜 서술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그가 혁명기에 충분히 있음직한 경로를 거치는 동시에 다른 이름난 혁명가들과 달리 그만의 독특한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그의 중도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정치 사상의 원천을 가늠해볼 수 있다.

중급 귀족 가문인 앙토넬가는 1565년에 샤를 9세에게서 작위를 수여받았고, 17세기를 거치면서 차차 제2신분에 통합되어 18세기 초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가문으로서 프로방스 지방의 귀족 사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앙토넬은 1747년 6월 17일에 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 1817년 11월 26일에 사망했다. 그가 받은 유년기 교육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1763년 파리 군사학교^{Académie militaire}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던 기록만 있을 뿐이다. 그는 1762년에 입대해서 파리와 스트라스부르에서 복무하다가 1782년에 전역하고 귀향했다. 그때부터 그는 파스칼, 라로슈푸코, 로크, 콩디약, 마블리, 아담 스미스,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와 같은 저자들의 책을 탐독했는데, 이 때 얻은 소양을 현실에 바로 적용해서, 성직자, 귀족, 왕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길렀고, 군주정의 토대로서의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만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명백하고 모순 없는 법이 필요하다고 쓰기도 했다.⁸⁾

1788년 칼론의 재정개혁안을 두고 벌어진 프로방스 지방의 논쟁에서 앙토넬은 『제3신분의 교리문답 *Catéchisme du Tiers-état, à l'usage de toutes les provinces*』을 출간해서 지방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자에서 그는 제1신분과 제2신분이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각각 제3신분과 동등한 대표 숫자를 확보하고 결탁함으로써 진정으로 생산에 기여하고 더 많이 납세하는 제3신분의 이해관계를 대신해서 결정해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귀족으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게도 제3신분 대표 수의 배가를 주장함으로써 확고하게 그들의 편에 섰고, 출생에 따른 특권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출생 신분을 뛰어넘었다.⁹⁾

혁명이 일어난 뒤 1790년 1월에 앙토넬은 아를의 첫 민선시장이 돼서 혁명의 새로운 의례들을 정착시키려 노력했고, 대주교와 그 파당에 맞서 반교권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했다. 당시 서명의 변경은 그의 정체성이 귀족에서 시민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그는 “기사 앙토넬 *Chevalier d'Antonelle*”이라고 서명해 왔지만 1790년 5월 15일에 처음으로 “피에르-앙투안 앙토넬”이라고 서명했다.

혁명과 행정의 경험을 쌓은 앙토넬은 1791년 8월 30일에 부슈-뒤-론도 *Bouche-du-Rhône* 道 대표로 입법의회에 선출됐다. 그는 입법의회 사무국과 의회 내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감시위원회 *comité de surveillance*에 소속

8) P. Serna, *Antonelle*, pp. 34~41, 54~55, 57~59, 458; François Wartelle, “Antonelle”, Albert Soboul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rééd. Quadrige, 2005), p. 26; Antoine Vincent Arnault, Étienne-François Bazot, Antoine Jay, Étienne de Jouy et Jacques Marquet de Montbreton Norvins, “Antonelle”, *Biographie nouvelle des contemporains ou Dictionnaire historique et raisonné...* (Paris: Librairie historique, 1820), p. 211.

9) Pierre-Antoine Antonelle, *Catéchisme du tiers état, à l'usage de toutes les provinces de France, et spécialement de la Provence* (1788); P. Serna, *Antonelle*, pp. 103~109; F. Wartelle, *op. cit.*, p. 26.

되어, 제한선거를 규정한 1791년 헌법의 “과도한 온건성”이 선량한 인민을 선거에서 배제한다고 비판하면서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했다. 1792년 1월에는 자코뱅클럽의 의장직을 맡았는데, 당시 부의장은 당통이었다. 이 후 그는 자코뱅클럽의 연락위원회 *comité de correspondance*에서 일했다. 아마도 이 시기에 국왕의 행정부가 의회 및 민중과 빗어낸 마찰을 목격하면서 앙토넬의 성향에 내재해 있던 급진적 혁명가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혁명의 급진화를 지지하고 주도하면서도 특정한 정치적 분파에 속하지 않으려 했고, 전쟁, 1792년 6월 20일과 8월 10일 봉기, 지롱드파와 산악파의 대결, 9월 ‘학살’과 같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는 콩도르세, 귀아데 *Marguerite-Élie Guadet*, 장소네 *Armand Gensonné* 등과 함께 혁명의 경직과 보수화에 반대하는 ‘결집 *la Réunion*’이라는 이름의 협회를 만드는 등 나름의 활동을 해나갔다.¹⁰⁾

앙토넬은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1792년 페티옹 *Jérôme Pétion*이 당선됐으나 고사함으로써 치러진 파리 시장 재선거에서 14,066표 중 2,195표를 얻어, 1,704표를 얻은 에로 드 세셀 *Hérault de Séchelles*을 제치고 시장으로 선출됐다. 앙토넬이 당시 파리에 서 어느 정도로 비중 있는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이유로 시장직을 거절했다. 세르나는 앙토넬이 산악파와 지롱드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산악파가 장악한 파리 코뮌의 시장직을 거절함으로써 마라와 로베스피에르의 사람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 했다고 해석한다.¹¹⁾

1792년 11월 22일에 국민공회는 앙토넬을 생-도맹그 *Saint-Domingue* 남쪽 일 수-르-방 *Îles Sous-le-Vent* 제도에 파견하는 판무관 *commissaire* 4명 중 하나로 임명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역풍 때문에 끝내 브레스트 *Brest*에서 출

10) P. Serna, *Antonelle*, pp. 109~189.

11) *Ibid.*, pp. 195~200.

항하지 못하고 프랑스 서부지역에 머무르면서 반혁명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런 다음 그는 1793년 8월에 파리로 돌아왔고, 혁명가들 중에서도 가장 급진파에 속한다는 당시 평판에 걸맞게도 “혁명의 진정한 종결”을 위해서는 더욱 급진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¹²⁾

앙토넬은 1793년 9월 말에 혁명재판소 배심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10월 2일부터 1794년 2월 21일까지 근무하면서 370건 중 53건의 재판에서 배심을 봤으며, 마리-앙투아네트와 지롱드파에 대한 재판에도 배석했다.¹³⁾ 그런데 그는 혁명재판소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혁명정부의 눈에 ‘혐의자^{suspect}’가 됐다. 1794년 2월 9일 로베스피에르는 공안위원회^{Comité de salut public} 포고령을 통해 혁명재판소 배심원들 중 일부가 배석참관인들에게 개인적 의견을 말하도록 허용하거나 물어보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런 행동은 재판소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단순히 배심원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이 포고령의 과녁은 배심원과 배석참관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앙토넬이었다. 그 후 앙토넬은 로베스피에르 정책의 반대자가 됐다. 한 달 뒤 로베스피에르는 앙토넬의 체포를 명령했다. 그는 3월에 투옥됐다가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후에 사면 받아 풀려났다.¹⁴⁾

5년 뒤 앙토넬은 총재정부의 언론 감시를 비판하면서 혁명력 2년 “공안위원회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유는 정지했고 인민의 대표 700명이 아닌 개인 10명으로 구성된 집행·권력^{pouvoir exécutif}이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들^{comités}이 의회로부터 자유를

12) *Ibid.*, pp. 204~206; Adolphe Robert & Gaston Cougny, *Dictionnaire des parlementaires français de 1789 à 1889*, tome 1 (Paris: Bourloton, 1889), p. 78.

13) P. Serna, *Antonelle*, pp. 206~214.

14) *Ibid.*, pp. 218~238.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혁명정부가 총재정부와 마찬가지로 집행권의 폭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단, 그는 공안위원회가 프랑스를 구했다는 점과 청렴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총재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대비시켜 비판했다.¹⁵⁾

열월 9일의 주역들은 1789년의 성과를 보존하는 동시에 민중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려 했다. 그 결과물은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을 되살리고 강화해서 “유산자 공화국”의 공고화를 도모한 ‘혁명력 3년^{1795년}의 헌법’으로 압축되었다. 한편 앙토넬의 정치사상과 결속된 총재정부기 좌파는 인민주권에 기초한 지속적 민주화를 지지하면서도 혁명력 2년의 경험을 피하고자 했다. 그들은 의원 수십 명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비중 있는 정치적 실체였으며, 그들의 점증하는 영

15) *JDHL*, 혁명력 7년 맥월 8일(1799년 6월 26일). “혁명정부는 치명적인 상황에서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자유가 사라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적들을 물리쳤다. 공안위원회가 끔찍한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안위원회는 결국 조국을 구했다. 모든 반혁명분자들이 공안위원회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공안위원회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러나 진실은 승리할 것이며, 훗날 공안위원회의 영광은 온전히 전해질 것이다. 혁명정부가 프랑스인들에게서 시민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앗아갔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프랑스를 보존해줬다. 혁명정부가 많은 즐거움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2백만 명 14개의 군을 창설했다. 더 나아가 혁명정부는 그 2백만 대군을 움직이고 고무해서 적에 승리하게끔 한 정신을 만들었다. 내부적으로는 혁명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도록 강제했다. 혁명정부 시절에 부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횡령과 착복은 드물었다. 혁명정부가 사용한 국고는 오직 적을 꺾는 데에만 쓰였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공안위원회의 폭군들(*tyrans du comité de salut public*)이 조국을 위해 한 일이다. 그렇다면 총재정부의 폭군들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군대 증강은 없었고, 우리의 공공신용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재정은 바닥났고, 공공정신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범죄의 원기왕성함, 부패의 강력함, 반혁명의 담대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총재정부는 폭군적인 면에서는 혁명정부의 그릇된 점을 모두 좇아갔다. 그러면서도 공화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혁명적 체제를 기도한다고 중상하면서 괴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총재정부는 5명밖에 안 된다. 공안위원회는 10명이나 되었었는데. 그리고 혁명정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조국을 구했다. 총재정부는 그와 반대로 법률을 집행하고 자유를 핏피우기 위해 수립되었음에도 그 통치기간 내내 법은 웃음거리가 되고 자유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에게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향력 때문에 총재정부는 각종 탄압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때에 따라 왕당파와 손잡아야 했다. 총재정부기에 그들은 ‘자코뱅’의 이름표를 유지했다. 반대파는 그들을 ‘과격분자들^{exagérés}’이나 ‘무정부주의자들^{anarchistes}’이라 불렀다. 올라르^{François-Alphonse Aulard}는 그들을 ‘민주공화파^{républicains démocrates}’ 또는 ‘신자코뱅’이라 불렀으며, 최근 연구자들은 그들을 ‘신자코뱅’이라 부른다.¹⁶⁾

앙토넬은 신자코뱅의 지도적 인사였으며, 다른 인사들로는 르펠르티에^{Félix Lepeletier de Saint-Fargeau}, 바타르^{René Vatar}, 데스트랑^{Hugues Destrem}, 메지^{Bernard Metge}, 주르당 장군^{Jean-Baptiste Jourdan} 등을 들 수 있다.¹⁷⁾ 앙토넬은 자코뱅이라는 이름표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공포정치와 동일시되는 것은 거부했다. 그는 혁명력 2년 위원회들의 통치를 이끌었던 것이 자코뱅 전체가 아니라 그것의 수많은 분파 중 하나였으며 공포정치가 공화국을 수호하려는 국민적 염원의 발현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자코뱅’이 공포정치를 이끌고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던 자들의 이름이라면 자신은 자코뱅이 아니지만 그것이 인민의 대의에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이라면 자신은 언제나 자코뱅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혁명력 2년의 지도층과 거리를 두었고, 혁명의 원칙들과 평등에 헌신하는 것이 자코뱅주의의 본질이라 주장했다.¹⁸⁾

신자코뱅은 지방의 명사들과 수공업, 상업, 농업 종사자들과 군

16) François-Alphonse Aulard, *Histoire pol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origines et développement de la de démocratie et la république, 1789~1804* (Paris: Armand Colin, 1909), pp. 624, 688; Michel Vovelle, *Les Jacobins: de Robespierre à Chevènement* (Paris: La Découverte, 2001), p. 30; B. Gainot, “La République comme association de citoyens solidaires. Pour retrouver l’économie politique républicaine (1792~1799)”, IHRF,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pp. 156~157.

17) F.-A. Aulard, *op. cit.*, pp. 627, 682; B. Gainot, 1799, p. 487.

18) Antonelle, *Le Contraste de sentimens, ou le citoyen Delacroix en présence d’un démocrate* (Paris: R. Vatar, 1795), pp. 20, 40~41.

인으로 구성됐으며, 그 지도층을 이룬 것은 주로 ‘부르주아’였다.¹⁹⁾ 열월 9일 이후 자코뱅클럽이 전국적 조직망과 정권과의 연계를 상실하고 독자적인 민중운동으로서의 상켈로트주의도 사라지자 자코뱅주의 내에서 작동하던 중간계급적 성향과 민중적 성향 사이의 긴장이 사라졌다. 이때부터 중간계급이 주도하는 평등주의가 총재정부의 보수주의와 바뵈프 François-Noël “Gracchus” Babeuf의 혁명적 급진주의 사이에서 운신하게 됐다. 신자코뱅은 바뵈프와 노선을 달리 하면서도 신체제의 보수주의에 저항했으며, 체제 전복 이후에나 가능할 바뵈프의 경제적 평등을 거부하고 합법성과 타협 위에서 시민적 평등을 추구했다.²⁰⁾ 그들은 혁명력 3년의 헌법을 수용하고 의회 내 반대파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개혁주의자가 됐지만, 자코뱅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압과 체포를 당했다. 총재정부는 방돔 Vendôme 재판 과정에서 그들을 바뵈프와 엮어서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신자코뱅 조직망은 와해됐고, 인사들은 정부 탄압과 백색테러를 피해 파리의 익명성 속으로 도피해야 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신자코뱅은 소멸하지 않고 ‘입헌동지회 cercles constitutionnels’라는 이름의 정치협회들을 구성하고 매년 시행되던 선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총재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고수했다.²¹⁾

왕당파가 혁명력 4년 포도월 13일(1795년 10월 5일)에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앙토넬은 국민공회의 진압군에서 백의종군했다. 한 달 뒤 바라스 Paul Barras 총재의 추천으로 정부 기관지인 『정책공보 Bulletin politique』의 주필로 임명됐으나 독립적인 논조를 보이고 정부의 뜻에 순응하지 않아서 열흘 만에 해임됐다. 이로써 앙토넬은 모든 공

19) B. Gainot, 1799, pp. 352~355, 449~481, 486.

20) I. Woloch, *op. cit.*, pp. 19~20, 27~28; M. Lyons, *op. cit.*, p. 27.

21) M. Lyons, *op. cit.*, pp. 28, 36; Richard Cobb, *Terreur et subsistances, 1793~1795* (Paris: Librairie Clavreuil, 1965), pp. 187~207; B. Gainot, 1799, p. 352; I. Woloch, *op. cit.*, pp. 46~47.

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자 왕당파는 물론이고 민주파·애국파도 신문들을 중심으로 결집했는데, 앙토넬은 신자코뱅의 “기관지”라 불릴 만큼 중추적 일간지였던 『자유인일보 *Journal des Hommes Libres*』에 집필진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²²⁾

『자유인일보』는 1792년 11월 2일에 바타르와 뒤발^{Charles Duval}이 창간했다. 바타르는 인쇄소 사장의 아들이자 렌^{Rennes}의 신문업자였다. 뒤발은 법복귀족 출신으로서 입법의회 의원을 지냈고, 창간 당시 국민공회 의원이었다. 그는 총재정부기에 오백인의회^{Conseil des Cinq-Cents}의 의원을 지냈으며 ‘흑인우애협회^{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1}’의 후신인 ‘흑인식민지우애협회^{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et des colonies, 1796-1799}’에서 회원으로 활동했다. 신문은 1800년에 폐간하기까지 거의 중단 없이 발행됐고, 정기구독 부수는 약 2천을 중심으로 시기에 따라 오르내렸다. 정기구독자의 직업은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의사, 소장인, 대상인, 사업가, 카페주인,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매일 4면 중 2면 이상이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나머지 지면을 채운 기고문들은 급진 공화파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었기에 극단적인 주장과 온건한 주장이 공존했으나, 전반적으로 『자유인일보』는 혁명의 성과를 지지하는 공화파의 온건중도 성향을 대표했다. 그것은 때로는 지롱드파를, 때로는 에베르파를, 때로는 공안위원회를, 그리고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총재정부와 혁명력 3년의 헌법을 지지했지만, 각 정권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포정치기에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는 신문 중 하나였으나, 공안위원회의 정책을 사안별로 지지 또는 비판함으로써 정부의 경계대상이 됐다. 총재정부기에는 왕당파에 맞서는 정부에 대한 원칙적 지지와

22) Erik Achorn, “Bernadotte or Bonapart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1, No. 3 (Sep., 1929), p. 380; Arnault et al, *op. cit.*, p. 213; Paul Bastid, *Sieyès et sa pensée* (Genève: Slatkine Reprints, 1978), p. 224; P. Serna, *Antonelle*, pp. 262~266; F. Wartelle, *op. cit.*, pp. 26~27.

사안별 비판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했음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아래 있었다. 『자유인일보』가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는 왕당파의 총선거 압승에 불안을 느낀 총재정부가 왕당파에 대한 공포정치를 일시적으로 재개하면서 신자코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 1797년 가을과 총선거에서 신자코뱅이 선전하여 의회에 진출해 언론의 자유를 확보한 1799년 여름이었다.²³⁾

앙토넬은 『자유인일보』에 기고하는 대표적인 민주파 인사로서 “신자코뱅 조류의 대변인”과 같았다.²⁴⁾ 당시 신문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했다.²⁵⁾ 『검열관 *Le Censeur*』을 비롯한 여러 왕당파 신문은 앙토넬을 짐승 같은 범죄자요 반역자라고 비방했는데, 특히 그의 혁명재판소 배심원 경력이 두고두고 문제가 됐다. 그가 혁명력 3년과 4년의 민주적 쇄신의 상징적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방은 필시 민주공화파 전체를 겨냥했다. 그래서 『자유인일보』는 다른 신문들을 공격해가면서 앙토넬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²⁶⁾

바뵈프는 혁명력 4년에 앙토넬을 평등과 음모의 비밀총재단 총재 6명 중 하나로 임명했다. 이 비밀 음모는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대안적 흐름이 공존했던 공화주의적 운동이었으며, 총재정부를 전복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도 이견들이 대립했다. 이

23) Marcel Dorigny & B. Gaino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9: contribution à l'histo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Éditions UNESCO, 1998), p. 316; Max Fajn, *The Journal des Hommes Libres de Tous les Pays, 1792-1800* (The Hague & Paris: Mouton, 1975). 신문에 대한 총재정부의 감시·검열·통제·탄압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Jeremy D. Popkin, *Revolutionary News: the Press in France, 1789-1799*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0), pp. 173-177에서 발견할 수 있다.

24) R. Monnier, *L'espace public démocratique: essai sur l'opinion à Paris de la Révolution au Directoire* (Paris: Éditions Kimé, 1994), p. 226.

25) J. D. Popkin, *The Right-Wing Press in France, 1792-180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pp. 14-16.

26) P. Serna, *Antonelle*, pp. 270-281.

른바 “바뵈프-앙토넬 논쟁”에서 앙토넬은 바뵈프와 갈라섰다. 그가 한편으로는 총재정부 체제가 파괴되어야 할 정도로 개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뵈프의 구상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음모가 발각되고 바뵈프와 동료들이 체포됐을 때 앙토넬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 연구자들은 그의 석방에 바라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한다.²⁷⁾ 세르나는 앙토넬이 체포되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도서 목록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플라톤, 키케로, 타키투스, 마키아벨리, 페늘롱, 몽테스키외, 볼테르, 마블리, 루소처럼 굵직한 저자들 외에도 당대의 정치 소책자들, 크롬웰 전기, 지리학, 미국 헌법 관련 서적들이 있었다.²⁸⁾ 그의 독서 범위가 협소하지 않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앙토넬은 총재정부 말기에도 계속해서 신자코뱅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는 1798년과 1799년에 부슈-뒤-론도의 오백인의회 대표로 선출됐으나, 1798년에는 제2차 선거회가, 1799년에는 오백인의회가 선거 결과를 승인하지 않아서 당선 무효가 됐다.²⁹⁾ 그는 총재정부의 선거 무효화 조치가 헌법의 뜻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³⁰⁾ 그 해 여름, 그는 신자코뱅의 회합 공간이 될 ‘평등과 자유의 벗들의 모임 Réunion d’amis de l’égalité et de la liberté’ 설립에 참여했다. 그것은 한때 제헌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오백인의회가 있던 툴리리궁³¹⁾ 승마장에 위치해

27) Maurice Dommanget, *Babeuf et la conjuration des Égoux*, 2e édition (Paris: Spartacus, 1989), pp. 59~60; P. Serna, *Antonelle*, pp. 297~342; F. Wartelle, *op. cit.*, p. 27; I. Woloch, *op. cit.*, p. 33.

28) P. Serna, *Antonelle*, p. 463.

29) B. Gainot, 1799, p. 449; P. Serna, *Antonelle*, pp. 368~374; F. Wartelle, *op. cit.*, p. 27; I. Woloch, *op. cit.*, pp. 53, 332.

30) Antonelle, *La Constitution et les principes opposés aux Floréalistes* (1798), pp. 4~12.

서 ‘승마장 협회 Société du Manège’라고도 불렸다. 파리의 여론에 이 협회가 끼친 영향력은 지대해서, 『모니퇴르 Le Moniteur』와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도 의회 의사 보도와 함께 협회의 토론을 정기적으로 보도할 정도였다. 협회의 토론에서는 사치세 및 누진세 도입, 공교육 실시, 시민 채무장, 구걸 퇴치를 위한 빈민구제공공작업장 설치, 공공정신고양을 위한 무료극장 설치,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공화국의 유일한 토대이자 지지대”인 “정치적 평등을 향해 인민을 다시 이끌고 가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과 같은 제안들이 등장했다.³¹⁾

총재단의 실권자가 된 시에예스는 목월 30일의 사건으로 기존 총재단을 무력화한 뒤 신자코뱅과의 정치적 동맹을 파기하고 ‘승마장 협회’에 대한 탄압을 개시했다. 앙토넬은 시에예스와 푸세에 맞서 『자유인일보』 기고문을 통해 정치적 사태 전개에 정력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왕당파 집회가 툴리리궁 정원에서 “물러가라, 앙토넬! 물러가라, 자코뱅!”을 외칠 정도로 앙토넬은 대표적인 신자코뱅이었다. 월로치는 총재정부 말기 신자코뱅주의가 곧 앙토넬이 “대의민주주의”라 부른 것의 옹호였다고 주장한다.³²⁾

신자코뱅이 패배하고 11월에 발생한 쿠데타로 통령정부가 수립되자 앙토넬은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켰으며, 잊힌 은둔자가 되는 데 성공했다. 일부 인사들이 그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통령 보나파르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1814년에 황제 나폴레옹에 대한 반대를 담은 『한 늙은이의 각성 Le Réveil d'un vieillard』이라는 글에서 민주주의적·공화주의적 원칙들을 군주제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총재정부기에 군주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31) E. Achom, *op. cit.*, pp. 380~389; Victor Bach, *Premier discours du citoyen Bach, à la réunion séant au Manège, sur les moyens de consolider la République* (Paris: chez l’Auteur, l’imprimerie de Benoist, 1799).

32) P. Bastid, *op. cit.*, pp. 219~227; I. Woloch, *op. cit.*, p. 395.

대의제로써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의 모습과 부조화를 이루는 한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모색했던 현실주의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³³⁾

33) Arnault et al, *op. cit.*, p. 213; F. Wartelle, *op. cit.*, p. 27; P. Serna, *Antonelle*, pp. 391~432.

Ⅲ. 혁명기 인민주권과 대의제의 갈등

혁명기에도, 그 전에도, ‘대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무기로서, 인민주권으로 표상되는 민주주의 담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의제 이론들 또한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엄격히 구분하려 했다. 그러므로 양자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인민주권론과 ‘민주주의’를 살펴보겠다.

제1절 인민주권과 민주주의

18세기 말 프랑스의 정치담론에서 민주주의 관념은 고대 아테네, 스파르타, 로마 공화국의 역사적 경험과 루소의 인민주권론에서 지지대를 발견했다. 문언만을 놓고 보면 『사회계약론 *Le contrat social*』은 일정 정도 다양한 전유가 가능한 복합적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을 거치면서 그것은 대체로 대의제와 대립하는 인민주권의 으뜸가는 이론서로 자리매김했다. 이 중심적인 이론서의 존재 때문에 주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불가양도성^{不可讓渡性}, 무오류성^{無誤謬性}을 핵심으로 갖는 인민주권론은 혁명기 내내 대의제 이론들에 비해 통일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상 혁명기 인민주권론을 가늠하는 데에는 그것에 대한 앙토넬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앙토넬은 인민주권론의 핵심 가정들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는 주권의 불가분성과 불가양도성을 확인한다.³⁴⁾ 그리고 그는 인민이 자연권에 따라 주권자이며, “국민을 구성하고 본질적으로 평등과 친한 거대한 민중” 속에서 인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34) Antonelle, *La Constitution et les principes*, pp. 2~4, 9~11.

다. 동시에 그는 프랑스 시민들의 총체가 주권자라고 말함으로써 인민을 사회적 하층에서 찾지 않고 추상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단 전체로 표상하기도 했다.³⁵⁾ 그리고 그는 주권 및 의지의 문제에서 ‘인민’과 ‘국민’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했다.³⁶⁾ 그것들은 양자 공히 주권의 본원이자 담지자였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의미를 갖지 않았다.

앙토넬은 인민을 구성원의 동질성을 강제하지 않는 하나의 신체이자 집합체로 생각했다. 그는 사회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집합이어야 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⁷⁾ 그런데 개인들은 단수형 ‘인민’으로 집결해야 주권자로서 단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 개인들을 단수형 일체로 만드는 방법을 두고 여러 주권 이론들이 분기한다.³⁸⁾ 인민주권론에서, 그리고 앙토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을 단수형 인민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계약, 즉 동의였다. 앙토넬은 개인들이 인민이라는 정치적 신체를 창설하고 그것에 포섭되는 데 동의할 때에만 인민에 포함되며 인민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사회계약이 인민 의지의 산물일 때만 인민은 신민이 되지 않고 “주권자로서 구성된다.” 반대의 경우 인민은 단순한 “집합-assemblage”에 불과하게 된다. 사회계약은 인민이라는 정치적 신체의 구성과 그것의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결정하는 요건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특권의 폐지가 있다. 그는 사회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인민-신체의 각 구성원이 권리에서 평등해야 하므로 인민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법적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³⁹⁾, 이는 1789년 제3신분의 혁명가들이 공유하던 관점이기도 했

35) P. Serna, *Antonelle*, p. 379.

36) Antonelle, *Le Contraste de sentimens*, pp. 33~36.

37) P. Serna, *Antonelle*, pp. 57~59.

38) Margaret Canovan, *The People* (Cambridge: Polity, 2005), pp. 94~105.

39) *JDHL*, 혁명력 7년 맥월 11일(1799년 6월 29일).

다.

‘인민’을 창설하는 사회계약에 정치적 신체를 창설하는 사회계약이 동행한다. 앙토넬은 국가의 기관들을 관장하는 정치체도의 창설 및 작동이 인민의 바람에 합치한다면 인민이 주권자지만, 정치체도가 인민의 뜻과 무관하게 혹은 인민의 뜻에 역행해서 수립되고 운용된다면 인민은 주권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치체를 창설하는 것은 헌법인데, 이것이 인민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 인민이 “토론한 뒤 대의를 알고서 주권자로서 승인하고 선언한다면” 인민은 주권자이며 최종 인가자이다. 그러나 인민이 헌법의 대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인민에게 “부과된다면” 인민은 예속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때 인민은 주권자 인민이 아닌 “예속적 시민사회의 군중(*foule des sociétés civiles asservies*)”이다. “인민이 승인할 때 인민은 모든 것이지만, 인민이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인민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처럼 그에게서 인민은 정치체의 꼭대기에서 자의식을 갖고 토론을 거쳐 헌법과 제도를 승인하고 비준할 때만 주권자로서 존재한다.⁴⁰⁾

이와 같이 사회계약에서 유래하는 인민의 주권은 입법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입법권은 “주권에 내재하는 동시에 주권을 구성하는” 속성이었다. 이 ‘입법권중심설 *légicentrisme*’은 혁명기에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보댕^{Jean Bodin}에게서부터 정식화되었고 18세기에는 특히 루소의 주장이었다. 앙토넬은 “주권 자체가 사실상 이전되고 양도되지 않는 한 이 속성은 이전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므로 주권의 속성으로서의 입법권을 “부여 받은 신체^{corps}가 시민사회에 존재한다면, 그 신체는 자신의 입법대권에 의해 사실상의 주권자이다.” 인민이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전혀 갖지 못한다면 법률은 “더 이상 인민의 의지가 아니”며 “인민의 주권은

40) *Ibid.*

사실상 양도된 것”이다. 주권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행사하는 자들의 것”이며 “자기 위에 주권이 행사되는 자들은 주권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인민은 대표자를 내세우는 즉시 그 자유를 상실한다는 루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⁴¹⁾ 이런 맥락에서 앙토넬은 입법부와 집행부는 “주권자가 아니며, 주권자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주권자라면 인민은 주권자가 아니었다. 주권자의 대권은 법을 개폐하는 것인데, 그 대권에 따라 입법부나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주권자의 속성으로서 헌법을 입맛대로 수정하고, 정지시키고, 폐지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⁴²⁾

앙토넬은 인민의 역량을 신뢰했다. 고대부터 18세기까지 아테네와 동일시되던 ‘민주주의’는 다수 빈곤층의 무질서한 직접지배로 표상돼왔는데, 앙토넬은 그와 같은 반민주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왕당파 및 보수공화파에 맞서면서, 민주주의는 광란이나 무질서가 아니며 인민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이 “지금까지의 과잉, 폭력, 일탈,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일한 주권자이자 자유의 진정한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제1차 선거회가 민주적 권리들을 갖게 되면 선동가들이 무지한 인민을 주물러 공포정치를 되살릴 것이라는 주장을 비판했다.⁴³⁾ 그는 귀족의 통치, 교황의 통치, 국왕의 통치가 민주주의보다 천배나 더 불쾌하고 가증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반대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것의 격랑에 대한 공포, 인민과 그들의 일탈에 대한 공포”는 참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⁴⁾

41) JDHL, 혁명력 7년 맥월 16일(1799년 7월 4일); Lucien Jaume, *Le discours jacobin et la démocratie* (Paris: Fayard, 1989), pp. 273~274, 279; Jean-Jacques Rousseau, 『사회계약론(외)』, 이태일(외) 옮김 (범우사, 2002), p. 126.

42) P. Serna, *Antonelle*, p. 379.

43) Antonelle, *Le Contraste de sentiments*, pp. 36~40.

전술한 앙토넬의 생각을 통해 그 핵심이 바뀌지 않은 인민주권론의 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인민주권론은 1789년 6월 신분제의회에서 ‘국민의회’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논변의 기저에 깔린 토대였기 때문에, 혁명의 지도자들은 그것의 논변을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버릴 수 없었고, 싫더라도 어떤 층위에서건 그것과 타협해야 했다. 그래서 혁명기에 제시된 대의제 이론들은 인민주권론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표의 부패와 민중의 준동을 동시에 통제할 것인지를 두고 분기했다. 구체제에서부터 혁명기까지의 대의제 이론들을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진행에 따라 살펴보겠다.

제2절 대의제

대의라는 관념은 구체제에서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베이커는 혁명 이전 프랑스의 여러 대의제 논변들을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군주는 자신의 신체로써 국민^{nation}을 대표해 왔는데, 군주의 신체에서만 국민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군주에 맞서는 국민의 개념이란 있을 수 없었다. 신분제의회는 군주에 대해 국민을 대표 또는 대의하지 못하며, 엄격한 기속위임의 원칙羈束委任, mandat impératif, 대표가 선출된 시점에 유권자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만을 실행 또는 의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신분의 의견을 군주에게 전달하고 표시할 뿐이었다. 이에 맞서 고등법원들은 자신들이 국민에 대해 군주를 대표하는 동시에 군주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절대군주제 이론가들은 이를 반박하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대표 또는 대의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공유되게 됐다. 국민은 대의되어야만 하는 무엇인가가 되었고, 이제 국민을 ‘어떻게’ 대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았다.⁴⁵⁾

44) JDHL, 혁명력 4년 화월 3, 5일(1796년 4월 22, 24일).

튀르고(Turgot, baron de Laune)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은 사회적 진보 관념에 토대를 두고 근대사회에 적합한 대의를 모색했다. 특권 대신 이익과 재산이 대의의 대상으로 제시됐고, 동류 추천 대신 선거가 선출방법으로 제시됐고, 머릿수 표결이 신분별 표결을 대신할 표결방식으로 제시됐다. 튀르고는 재산에 기초해서 지역 대의체들로 구성된 단일체 국민을 구상했다. 기속위임과 공통이성 사이의 중간적 장치들이 잔존하는 가운데, 대표자들의 주 임무는 공동체의 ‘의지’를 대리하는 것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토의하는 것으로 옮겨갔다.⁴⁶⁾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혁명은 처음부터 대의제를 통해서 실현됐다. 시에예스는 1789년 1월에 출간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Qu'est-ce que le tiers-état?*』에 당대의 급진적인 논변들을 녹여서, 국왕이 아닌 인민으로부터 유래하는 대의제 정부의 원칙들을 세우고 구체제의 신분제의회와 절대왕권의 정당성을 침식하고자 했다. 이 글은 앙토넬의 『제3신분의 교리문답』과 같은 급진적 소책자들의 논지를 정교하게 통합하고 있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대의제를 국민주권과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규정했다. 먼저 시에예스는 공통의 법을 갖는 정치체만이 국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특권층을 국민에서 배제했다. 또한 단일한 공통의지가 국민을 대의하므로 신분제의회는 부적절하게 됐다. 이로써 단일한 의지를 단일한 대의로 연결하는 공식이 탄생했다.⁴⁷⁾

그런데 시에예스에게서 프랑스의 국민적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45) Keith Michael Baker, *Inventing the French Revolution: Essays on French Political Cul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224~235.

46) *Ibid.*, pp. 238~243.

47) *Ibid.*, pp. 244~251; Christopher Hobson, “Revolution, Representation and the Foundations of Modern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July, 2008), p. 453.

반대되는 것으로서 정립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1789년 9월 7일 연설에서 “프랑스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일 수 없다”⁴⁸⁾라고 말한 것은 18세기 정치사상을 지배하던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이항 대립적 개념화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그에게서 국민은 주권자지만 스스로는 대표를 지명할 뿐이며 입법과 통치는 오직 대표를 통해서만 하고, 직접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게서 정치적 대의란 프랑스가 대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 동시에, 복잡다기한 근대사회에서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사회적 분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가 구상한 근대 분업 사회에서 인민의 직무는 정치가 아니라 생산과 노동이었다. 정치는 오직 대표들의 일이었다.⁴⁹⁾

‘군주파(monarchiens)’의 수장 무니에(Jean-Joseph Mounier)는 1789년 8월 12일 연설에서 “절대군주의 전제(despotisme d'un monarque absolu)”와 “다중의 전제(despotisme de la multitude)”에 모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에예스의 1월 소책자에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대중의 직접적 정치참여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 무니에는 비록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지만 그것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국민은 “국민이 주권의 수탁자로 삼은 인물들의 의지와 다른 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프랑스 국민의 의지는 국왕과 대표들의 의지들의 일치를 통해 형성

48) 최갑수,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프랑스대혁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3(2), (2003.10), p. 28에서 재인용.

49) C. Hobson, *op. cit.*, pp. 452~454; R. Monnier, *Républicanisme*, pp. 54~55; Pasquale Pasquino, *Sieyès et l'invention de la constitution en France* (Paris: O. Jacob, 1998), pp. 31~52; William H. Sewell, *A Rhetoric of Bourgeois Revolution: the Abbé Sieyès and What is the Third Estat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4), pp. 88~93; Emmanuel Joseph 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박인수 옮김 (책세상, 2009), p. 95; Andreï Tyrsenko, “L'ordre politique chez Sieyès en l'an III”,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janvier-mars 2000), pp. 27~45; Nadia Urbinati, *Representative Democracy: Principles and Genea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pp. 6~8.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민주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하면서도 “주권의 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서로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⁵⁰⁾

1789년 당시에는 로베스피에르도 군주제 폐지를 말하지 않았다. 혁명가들은 국민주권의 원리 위에 설정된 대의제 정부를 입헌군주제라는 전망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표상했고, 1791년의 헌법은 입헌군주제와 철저한 대의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0일 국왕 일가가 월경 도주를 기도하다가 바렌^{Varennes}에서 저지당해 파리로 붙들려 돌아온 사건 이후 프랑스는 군주제 폐지를 향해 치달았다.⁵¹⁾ 당시 거의 발언을 하지 않던 앙토넬도 코르들리에 클럽 의장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루이 16세가 바렌 도주로써 “인민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게 상실했다고 말하고, 무오류성을 갖는다고 간주되는 헌법이 국왕의 불가침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규정이 하나의 “허구^{fiction}”라고 간략하게 비판하고, 국왕 일가와 대신들이 인민의 권리를 더 많이 침해한다면 법의 칼날 앞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⁵²⁾

1792년 2월, 페인^{Thomas Paine}의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 제2부가 출간됐다. 페인은 대의제 정부가 세습군주제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치에 오직 두 가지 원칙만이 있다고 썼다. 첫째는 세습제로, 군주정과 귀족정이 여기에 속했다. 둘째는 공화제로, 민주정

50) L. Jaume, *Échec au libéralisme: les Jacobins et l'État* (Paris: Éditions Kimé, 1990), pp. 23~24; Jeremy Jennings, *Revolution and the Republic: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France since the Eighteenth-Centur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76.

51) 국왕 도주 사건이 군주제 폐지, 공화정 수립, 공포정치 실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David Andress, *The Terror: the Merciless War for Freedom in Revolutionary Franc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6)와 Timothy Tackett, *When the King Took Fligh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를 참조.

52) P. Serna, *Antonelle*, pp. 173~175.

과 대의제 체제가 여기에 속했다. 주권의 원칙과 정부의 형태 사이에 필연적이고 단선적인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던 루소와 달리, 페인은 그 둘을 긴밀하게 연결했다. 그는 대의제를 군주정 및 귀족정에 대비시켰고, 그것을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인식했다. 대의를 통해 기존 민주주의의 충동적인 양상을 완화시켜 더욱 이성적이고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적합한 정치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⁵³⁾

1792년 9월 22일에 공화정이 선포되고 1793년 1월 21일에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혁명의 지도세력 내부에서 군주제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그것은 반혁명의 전유물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 ‘민주주의’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주정은 대체로 비현실적인 대안이자 무질서를 낳을 것이 분명한 정부형태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됐으며, 고대 아테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민주정의 혼란을 우회하는 공화정이 긍정적인 정치 개념으로서 유통됐다. 그런 면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페인의 긍정적 언급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었다.⁵⁴⁾

그런데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대립시키던 관념을 거부하면서 그 둘이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793년 6월에 “순수한 민주주의(démocratie pure)”에 대비되는 “법으로 제한한(tempéré par les lois)”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1794년 2월에는 “민주주의란 인민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대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공식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의 속에

53) Thomas Paine, *Rights of Man, Common Sense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321, 358~360, 387~390. 국역본 『상식, 인권』, 박홍규 역 (필맥, 2004); C. Hobson, *op. cit.*, pp. 457~458; N. Urbinati, *op. cit.*, pp. 172~175.

54) R. Monnier, *Républicanisme*, p. 57. 프랑스혁명과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의 문제에 대한 개설은 최갑수, 「공화국, 공화주의, 프랑스」를 참조하라. 또 R. Monnier, *Républicanisme*, pp. 77~84에서 혁명가들이 ‘공화국’과 ‘공화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대의 원칙을 새겨 넣었다. 당시는 그가 ‘혁명정부’를 이끌면서 파리 민중의 준동을 통제하려 한 시기였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표들이 특권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인민과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고, 주권의 불가양도성과 대표 권력의 제한을 꾸준히 주장했다. 1793년을 지나면서 급진적 정치담론이 비판의 표적을 군주 및 귀족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바뀐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콩도르세도 최근까지 과소평가돼 왔지만 주목할 만한 사유를 제시했다. 그는 인신의 안전 및 자유, 소유의 안전 및 자유, 권리의 평등을 “자연권의 원칙들”로 내세우고, 전제와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화국의 원리적 정당성을 그것으로부터 구했다. 또 그는 다수결 투표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음을 증명하는 자신의 확률이론에서 민주주의의 실용적 정당성을 구했고, 권리와 의무의 평등으로 나아가는 수단적 희망을 공교육과 회합을 통한 인민의 ‘계몽’에서 찾았다.⁵⁶⁾ 콩도르세는 인민이 의사결정에서 즉시성을 보이는 직접민주주의가 열정에 지배되는 잘못된 결정들로 귀결된다고 판단했고, 토론 없는 투표를 주장했던 루소와 반대로 토론을 거치는 여러 단계의 중첩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협회나 제1차 선거회처럼 인민이 직접 회합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55) C. Hobson, *op. cit.*, pp. 462~464; L. Jaume, *Le discours*, pp. 80~83; R. Monnier, *Républicanisme*, p. 51.

56) Jean-Antoine-Nicolas de Caritat Condorcet, “Idées sur le despotisme, à l’usage de ceux qui prononcent ce mot sans l’entendre”, *Œuvres de Condorcet*, tome 9e (Paris: Firmin Didot frères, impr. de l’Institut, 1847), p. 166; Condorcet,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장세룡 옮김 (책세상, 2002); L. Jaume, *Le discours jacobin*, pp. 306~307; Emma Rothschild, “Condorcet and the Conflict of Values”, *The Historical Journal*, Vol. 39, No. 3 (Sep., 1996), pp. 677~701; David Williams, *Condorcet and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206~212; H. P. Young, “Condorcet’s Theory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No. 4 (Dec., 1988), pp. 1231~1232.

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속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⁵⁷⁾

1793년 헌법의 제정 과정은 대의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콩도르세가 국민공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은 너무 정교하게 구성돼서 실현하기 힘들었고, 인민의 의지를 촘촘하게 다스려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관계에 대한 참신한 관념을 포함했다. 특히 초안 제9부는 입법부가 매 20년마다 또는 언제든 시민이 원할 때 헌법을 개정할 국민공회를

57) N. Urbinati, *op. cit.*, pp. 176~221. 혁명기 정치협회에 대해서는 Danièle Pingué, “Les sociétés politiques: des laboratoires de démocratie”, M. Biard (dir.), *op. cit.*, pp. 95~106을 참조하라. 다니엘 땡게의 이 연구에 따르면 정치협회들은 독서회나 프리메이슨 집회처럼 기존 회원들의 동의와 회비의 납부가 가입의 조건이었다. 이 점에서 그것들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제1차 선거회와 달랐다. 초창기 정치협회들의 활동은 주로 독회와 토론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토론모임이 아닌 정치활동기관처럼 행동했으며, 회의를 통해 사람들을 시민으로 교육시키는 것과 선전활동을 통해 혁명의 적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녔다. 협회들의 내부 작동은 어디에서나 비슷했다. 회원가입 문제는 규율에 따랐다. 행정업무는 선출된 사무국이 맡았다. 사무국의 임기와 권한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총회가 임명한 임시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했고, 회의는 정확하게 짜인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땡게는 이런 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작동이 서로 완전히 똑같은 협회는 한 쌍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내규를 다듬고 일상적 관행을 다양화시키는 모색의 과정이 각 협회가 내부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혁명 이전 결사체들의 유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파리의 자코뱅클럽과 다른 협회들의 사례로부터 영감을 얻어, 협회들은 점차로 작동규칙을 발전시켰고, 그들의 일상적 경험으로써 그것의 효율성을 검증했다. 회원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30~45세의 성인으로서, 결혼하여 집안의 가장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종 상상하는 바와 달리 결코 사회의 소외집단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협회원들의 참여수준은 단순한 가입에 그쳤지만, 땡게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현실정치 참여를 의미했다고 해석한다. 실제로 가입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입은 여러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량한 애국자’인지 확인하는 수고로운 투표의 의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게다가 비정기적으로라도 회합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들은 땡게의 표현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실천이 탄생하는 진정한 실험장”이었다.

소집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규칙들을 명시했다.⁵⁸⁾ 콩도르세는 시민 대다수가 정의에 반하거나 자유에 위협하다고 판단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1차 선거회들이 법률을 승인·거부뿐 아니라 발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악파는 제1차 선거회의 법률 거부권만을 1793년 헌법의 최종 문언에 반영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사실상 행사하기 힘들도록 엄격한 발동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⁵⁹⁾ 산악파 헌법은 인민주권과 일반의지를 대의하고 체현하는 것으로서 의회를 내세우고 인민주권의 실질적 행사에는 족쇄를 채웠으며, 주권의 원천을 인민에게서 찾으면서도 그것이 철저하게 대표들을 통해 대의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1795년의 헌법과 공통점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⁶⁰⁾

콩도르세의 초안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그가 초안에 녹여 넣은 고민들은 앙토넬에게로 이어졌다. 3년 뒤 앙토넬은 혁명력 3년 헌법의 개정을 주장했는데, 거기서 “민주주의의 정신은 콩도르세가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리고 최소한, 인민이 자신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느끼는 헌법의 개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합법적이고 항시 개방되어 있는 수단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혁명 전반기에 함께 활동하기도 했던 콩도르세를 명시적으로 원용했던 것이다.⁶¹⁾

58) Michel Verpeaux (ed.), *Textes constitutionnels révolutionnaires françai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8), pp. 67~69.

59) Malcolm Crook, *Elections in the French Revolution: Apprenticeship in Democracy, 1789~17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04.

60) L. Jaume, *Le discours jacobin*, p. 334; Michel Troper, “La constitution de l’an III ou la continuité: la souveraineté populaire sous la Convention”, Roger Dupuy & Marcel Morabito (dir.), *1795. Pour une République sans Révolution, actes du colloque de Rennes 1995*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1996), pp. 179~192.

그런데 혁명력 2년 공안위원회와 국민공회는 파리 민중의 준동이 초래할 폭력과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려 했고, 따라서 실질적 권력을 구의 민중에게서 국민공회로 완전히 이전시켰다. ‘혁명정부’는 좌우 세력들에 대한 양보와 숙청을 거듭하며 반란 진압과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보급과 민중의 식량 확보를 위해 당시의 기준으로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대의는 ‘덕성^{vertu}’에 근거한 상징적 수사로 변했다. 산악파가 정권을 장악한 뒤 보여주는 이처럼 철저한 대의제적 경향은 인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거부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진정한 인민’의 ‘진정한 의지’를 체현한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혁명정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인민의 진정한 의지를 수호한다고 확신했을 것이나, 그것은 혁명의 성과를 지켜내는 한편 그 힘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효과도 지녔다.⁶²⁾

1789년부터 1794년까지 인민주권과 대의제 사이의 이론적·현실적 갈등은 후자의 확립에서 전자의 상승으로 나아가다가, 공포정치기에 후자가 전자를 포섭하면서 지배하게 됐다. 인민주권의 신봉자들은 현실의 대의제 속에서 꾸준히 출구를 모색했으나 결국 그것을 찾지 못했다. 1795년에 대의제는 완전한 승리를 구가했다.

혁명력 3년의 헌법은 공화국을 계승하면서도 혁명력 2년의 “폭정”과 “무질서”의 부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국민공회의 확고한 의지 아래 입안됐다. 헌법의 실질적 작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부아시당글라^{François-Antoine de Boissy d'Anglas}는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따라서 법과 질서의 유지에 큰 관심을 갖는 자들, 즉 “가장 뛰어난 자들”이 프랑스를 다스려야 하며, 재산을 갖지 못한 자들

61) JDHL, 혁명력 4년 화월 3일(1796년 4월 22일).

62) L. Jaume, *Le discours jacobin*, pp. 336~385; Jean-Clément Martin, “Violence/s et R/révolution, les raisons d'un malentendu”, M. Biard (dir.), *op. cit.*; Robert Roswell Palmer, *Twelve Who Ruled: the Year of the Terror in the French Revolu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1), p. 277.

이 다스리는 나라는 “자연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⁶³⁾

헌법은 그 정신을 따라 민중의 급진적 해석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전문의 ‘권리선언’과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했다. 그리고 선거권에 대한 재산자격기준을 더 강화했고, 결과적으로 3만 명에 불과한 선거인단이 의회의 대표들을 선출하게 됐다. 또한 헌법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9년이 걸리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개헌 절차를 규정했다.⁶⁴⁾ 헌법 입안자들은 자코뱅 클럽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제360조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결사”의 형성을 금지했고, 제361조는 ‘민중협회(société populaire)’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했다. 제362조는 협회들 상호간의 연락 및 협정을 금지했고, 제364조는 집단청원을 금지했다. 이 조항들은 선거권에 대한 제한 규정들과 함께 신자코뱅의 개헌 목표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에는 1789년에 탄생한 정치적 자유주의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제353조는 발언, 저술, 출판의 자유를 보장했고, 사전 검열을 금지했으며, 제359조는 자의적인 가택 수색을 금지했다. 이것을 비롯한 헌법의 여러 자유주의적·공화주의적 면모들은 신자코뱅이 1799년에 호헌을 주장하는 기초가 된다.

지금까지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앙토넬은 여러 곳에서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혁명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파리에서 인민주권론을 버릴 수 없었던 혁명가들이 대의제를 규정하는 상이한 방식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듬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뒤이어 총재정부기의 상황 속에서 혁명의 민주적 성과를 되살리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프랑스가 단일

63) Andrew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After the Terror: the Republican Origins of French Liberalis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p. 27, 43.

64) 최갑수,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pp. 51~53.

국가로 존재하면서도 인민의 예속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 인민주권의 원리와 자유주의의 원리가 공히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조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체제를 모색했다.⁶⁵⁾ 즉 민주주의의 원칙적 정당성과 역동성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의 과도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민주적 원칙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체제의 밑그림을 그려보려 했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 실체를 살펴보겠다.

65) *JDHL*, 혁명력 4년 화월 3일(1796년 4월 22일).

IV.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앙토넬은 인민주권론과 대의제의 갈등을 그가 1795년부터 제시한 “대의민주주의” 구상을 통해 돌파하려 했다. 그 구상은 민주주의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자 했던 당대 대의제 이론가들의 일반적 경향에 역행하면서 민주적인 ‘대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보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오늘날과 달리 ‘대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형용모순의 반대개념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앙토넬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당대 정치담론 속에서 과감하게 ‘민주주의’를 명사로 놓고 ‘대의’를 수식형용사로 놓은 ‘대의민주주의’라는 단일 개념을 사용했으며, 그로써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앙토넬은 주로 『자유인일보』의 논설에서 사상을 전개했다. 그는 1795년 6월 21일부터 1799년 10월 31일까지 서명을 바꿔 가며 183건의 기사를 작성했는데, 두 번의 고조기가 있었다. 그는 이 시기에만 146건의 기사를 썼고, 그 중 여러 편의 연작 기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사상을 피력했다. 첫 번째 고조기는 1795년 11월부터 1796년 9월까지로, 이른바 평등과 음모의 시기이다. 이 시기 연작 기사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뵈프와 동료들이 체포되기 약 보름 전인 1796년 4월 22일^{혁명력 4년 화월 3일부터 4월 25일 화월 6일까지} 나흘 동안 게재된 「민주주의 *Démocratie*」이다. 그 외에도 1796년 3월 8일^{혁명력 4년 풍월 18일}, 1796년 4월 8일^{혁명력 4년 종월 19일}, 1796년 4월 21일^{혁명력 4년 화월 2일}, 1796년 5월 7일^{혁명력 4년 화월 18일}, 1796년 9월 8일^{혁명력 4년 숙월 22일}의 기사가 돋보인다. 두 번째 고조기는 1799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신자코뱅이 선거에서 선전하고 의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켰던 시기이다. 앙토넬의 연작 기사 중에서는 6월 23, 24, 26, 28일 및 7월 2, 6일^{혁명력 7년 맥월 5, 6, 8, 10, 14, 18일}에 게재된 「자유인들에게 *Aux hommes libres*」와 6월 29일 및 7월 3, 4, 7, 8,

9, 18일^{맥월 11, 15, 16, 19, 20, 21, 30일}에 게재된 「헌법의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한 재고찰-Rappel de quelques principes de droit constitutionnel」이 돋보인다.⁶⁶⁾

이 글들을 중심으로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그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적 원칙들을 지키면서도 사회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하게 현실적인 구축물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1796년 3월에는 “대의민주주의와 합의^{concorde} 속에서만 만인의 행복과 안전이 자연스럽게 존속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⁶⁷⁾ 한 달 뒤 그는 “오직 대의민주주의만이 이성적이고 정당한 정부”라고 말했다.⁶⁸⁾ 이 장에서는 먼저 그가 제시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정리하고, 그가 그 원칙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체계를 어떻게 구상했는지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그 본질에서 계속해서 ‘민주주의’로 남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가 설정한 보호막들을 확인하는 순서를 밝을 것이다.

제1절 “대의민주주의”의 원칙

앙토넬은 프랑스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민주주의에 부적합하다는 관념을 비판하면서 인민의 다수성과 다양성이 하나의 정치적 신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 논리를 재활용했다. 2,700만

66) B. Gainot, “La notion d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e legs néo-jacobin de 1799”, Michel Vovelle (dir.), *L'imag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communications présentées lors du Congrès mondial pour le bicentenaire de la Révolution, Sorbonne, Paris, 6-12 juillet 1989*, vol. 1 (Paris and New York: Pergamon Press, 1989), p. 523; P. Serna, *Antonelle*, pp. 267~270. 가장 흔하게는 “앙토넬^{P. A. Antonelle}”이라 서명했다.^{1795년 12월 13일부터} 바뵈프 음모로 인한 수배령 이후와 방둠 재판 시기에는 “과리 인근의 은둔자^{Hermite des environs de Paris}”라 서명했다.^{1796년 5월 29일부터} 혁명력 5년 화월 쿠데타에 뒤이은 1797년 여름에는 “아라스 인근의 은둔자^{Hermite des environs d'Arras}”라 서명했다. 1799년 여름 동안에는 “성실^{Bonnefoi}”이라 서명했다.

67) JDHL, 혁명력 4년 중월 9일(1796년 3월 29일)

68) JDHL, 혁명력 4년 화월 3일(1796년 4월 22일).

명은 “국토 전체에 걸쳐 단 하나의 인민체 *corps du peuple*를 형성”하는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⁶⁹⁾ 그는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 인민이 선출한 700~80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의회로 귀착”되므로 단 하나의 인민을 형성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봤으며, 인구의 다수성과 민주주의의 불가능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론적 고리를 끊었다. “커다란 영토를 수축시키는 교신과 소통” 위에서 국민적 대의는 토론과 의지들의 규합을 가능하게 하여, 대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현실적 조건이자 제도로서 기능할 것이었다.⁷⁰⁾

루소와 페인처럼 앙토넬도 국민적 대의제가 고대 민주정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것이며, 역사적으로 근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루소가 주권이 대의될 수 없고 선거는 귀족정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음을 천명한 것과 반대로, 앙토넬은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적절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 인민의 감시 하에 대의제가 공정하게 실행됐더라면 술한 내전과 무질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때 ‘고대 사회’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던 다수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공화정 시대의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로써 앙토넬이 대의를 필요악으로서 받아들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충동성을 완화하고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도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게서 근대 정치는 대의제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고대보다 앞선 것이었지만, 대의제를 실행할 잠재적 가능성은 근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의 대의민주주의는 고대·근대를 가리지 않고 소국·대국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국민적 대의제와 결합함으로써 대국에도 얼마든지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 됐

69) *JDHL*, 혁명력 4년 화월 3일(1796년 4월 22일).

70) *JDHL*, 혁명력 4년 화월 4일(1796년 4월 23일).

다.⁷¹⁾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정식화를 받아들여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정치체제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창설될 것을 요구한다. 공통이익에 따라 인민이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직접 잘 할 수 있는 것은 인민이 직접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임기가 정해져 있고 책임을 지며 인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감시받는 수탁자를 이용해서 명시적인 위임을 통해서 한다.⁷²⁾

‘명시적인 위임(délégation expresse)’은 기속위임보다는 직접보통선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위임이 양도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보증하기 위해 임기·책임·감시와 같은 지속적 요건들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선거를 통한 위임’이라는 관념 때문에, 앙토넬은 보통선거가 대의의 기본 요건임을 웅변하고 그것의 실시를 꾸준히 요구했다. 이는 로베스피에르가 투표권과 재산의 연계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앙토넬에게서 대의는 민주주의를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인민의 정치 참여 배제를 목표로 삼는 이론적 장치들은 그의 사상에 통합될 수 없었다.⁷³⁾

혁명기에는 ‘제1차 선거회(assemblée primaires)’가 ‘선거인단(électeurs)’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들이 모인 ‘제2차 선거회(assemblée électorales)’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대표들을 선출했다. 그리고 선거의 각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 시민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앙토넬은

71) *Ibid.*; C. Hobson, *op. cit.*, p. 458; Rousseau, *op. cit.*, pp. 123, 140~143.

72) *JDHL*, 혁명력 4년 화월 3일(1796년 4월 22일).

73) Antonelle, *Le Contraste de sentiments*, pp. 51~57.

1795년의 헌법이 제한선거와 간접선거를 설정해서 “대의라는 관념을 끈질기게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대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고, 그래서 헌법 논쟁이 한창일 때 그 헌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1796년 4월 16일 포고령이 누구든 1793년의 헌법을 입에 담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뒤부터 그는 새로운 헌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일부 개정을 주장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는 보통선거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어서 개정한다면 그것이 공화국 헌법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왕당파에 맞서 그것을 수호하는 편에 섰다. 그는 새로운 헌법이 “질서와 힘의 진정한 수단이므로 모든 선량한 시민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헌법에 대한 공적 존중과 신실한 복종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헌법을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행할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을 공공정신 *esprit public*이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신중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⁷⁴⁾ 그리고 이 요구는 1799년까지 이어졌다. 1796년 말부터 1799년 봄 사이에 ‘자매공화국들 *républiques sœurs*’에서 작성된 일부 헌법들이 재산을 불문하는 남성보통선거를 규정했던 만큼, 신자코뱅에게 혁명력 3년의 헌법의 민주적 개정은 더욱 필요한 동시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였을 것이다.⁷⁵⁾

74) *JDHL*, 혁명력 4년 화월 4일(1796년 4월 23일); P. Serna, *Antonelle*, pp. 252~254; 인용은 *L'Orateur plébéien ou le Défenseur de la République*, par J. J. Leulliette et M. A. Jullien, paru du 21 brumaire au 30 germinal an IV (12 novembre 1795 au 19 avril 1796), pp. 3, 7 - P. Serna, *Antonelle*, pp. 263~264에서 재인용.

75) R. R. Palmer, *The Age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a Political History of Europe and America, 1760~1800*, vol. 2, *The Strugg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 346~348.

제2절 국가와 사회의 체계

대의민주주의는 국가의 구성요소들을 서로 어떤 관계 속에 놓았는가? 앙토넬은 “자유로운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권력은 본질상 법에만 속하는” 것이므로 집행권은 “법을 집행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대리일 뿐”이라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단언은 총재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신자코뱅과 언론에 대한 탄압 때문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혁명력 3년의 “헌법은 어디에서도 집행권에게 정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집행권은 권력도 정부도 아니며, 정부는 곧 입법권이라고 주장했다.⁷⁶⁾

자유와 이성의 위임에 따라 헌법은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차적으로 대표들에게 속한다. 인민은 대표들에게 공적 의지 *volonté publique*를 가질 권한을 부여했다. 오직 대표들만이 다스린다. 대표들은 입법부를 통해 다스린다. 그들은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한다.⁷⁷⁾

유일하게 다스리는 주체로서 제시된 “대표들”은 문맥상 주권자인민의 직접적 의지가 아닌 집행권에 대비된다. 그의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대표들은 인민의 직접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권보다 우선한다. 그가 구상한 사슬 체계에서, 장관들은 집행권에 종속되고, 집행권은 입법권에 종속된다. 그의 견지에서는 이것이 인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정부 조직방식이었고,⁷⁸⁾ 입

76) JDHL, 혁명력 7년 맥월 5, 6, 8일(1799년 6월 23, 24, 26일).

77) JDHL, 혁명력 7년 맥월 5일(1799년 6월 23일).

78) JDHL, 혁명력 7년 열월 18일(1799년 8월 5일).

법부는 집행부가 자신의 대권을 침탈하려는 모든 의도를 봉쇄할 책임을 지냈다.⁷⁹⁾ 그래서 1799년 6월 앙토넬은 입법권이 집행권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갖 발생한 목월의 의회 쿠데타가 입법부의 확고한 우위를 확보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설정했다.⁸⁰⁾ 다시 그는 두 달 뒤에 입법부가 무한권력을 추구하는 총재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며, 혁명력 3년의 공화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⁸¹⁾

입법권의 우위라는 관념은 루소의 인민주권론에서 온 것이었다. 루소에게서 인민은 주권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집행하기도 하는 것이었는데, 주권의 집행이란 곧 입법이였다. 일반의지는 오직 일반적인 것에만 관계하므로, 주권자로서의 인민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여하는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했다. 주권은 일차적으로 입법권이었고, 집행권은 입법권에게서 법의 집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여받은 “공복”이었다. 이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이 평형을 이룬 것과 대비된다.⁸²⁾ 루소는 『폴란드 정부론 *Considérations sur le gouvernement de Pologne et sur sa réformation projetée*』에서도 입법권을 집행권보다 우위에 두었고, 전자보다 후자에 훨씬 더 많은 견제장치를 설정했다.⁸³⁾ 혁명가들은 루소의 일반적 영향 아래 있었고, 대부분 집행권이 입법권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을 염려하고 집행권에서 ‘권 *pouvoir*’을 제거하고 그것을 일종의 위원회 *commission*로 만들고자 했다.⁸⁴⁾

79) P. Serna, *Antonelle*, p. 375.

80) *JDHL*, 혁명력 7년 맥월 6일(1799년 6월 24일).

81) *JDHL*, 혁명력 7년 숙월 6일(1799년 8월 23일).

82) Rousseau, *op. cit.*, p. 130.

83) David Lay Williams, *Rousseau's Platonic Enlightenment*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7), pp. 194-206.

84) P. Rosanvallon, *Le modèle politique français: la société civile contre le jacobinisme de 1789 à nos jours* (Paris: Seuil, 2004), pp. 101-105. 프랑스의 혁명가들에게 루소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갑수, 「루소와 프랑스혁명」,

다른 신자코뱅들과 더불어 앙토넬은 확고하게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했고, 1799년에 이르러 신자코뱅의 “대의민주주의” 기획은 현실 정치에서 시에예스, 콩스탕, 도누의 “대의제 정부”의 정반대편에 섰다.⁸⁵⁾ 이는 선거운동을 통해 의회에 진출하고 혁명력 3년의 헌법을 개정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전진시키려 했던 신자코뱅의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관념은 혁명력 2년의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비요-바렌 등에서도 나타났다.⁸⁶⁾ 그러나 총재정부기 신자코뱅의 입법권 우위론은 혁명력 2년 산악파의 그것과 차이를 보였다. 후자는 지속되는 패전과 국내의 반혁명 봉기라는 악재에 직면해 장관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협회에 대해서도 국민공회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자는 제1차 선거회가 입법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최종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협회와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espace public}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행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되 제1차 선거회나 정치협회에 대해서는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앙토넬은 정부는 곧 헌법이라고도 주장했다.⁸⁷⁾ 입법권의 물적 체현처럼 인민의 뇌리에 각인되고 정치체의 정점에서 그것을 포괄하는 헌법은 체계의 보증서로서 제시됐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인민과 맺는 관계, 그리고 정치가 사회와 맺는 관계를 보증하는 법체계 꼭대기에서, 헌법은 인민 위에 있지 않고 인민의 의지에 따르면서 인민주권의 대의와 대의제의 민주성을 모두 보장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었다. 따라서 좋은 헌법의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았다. 앙토넬은 공화주의 헌법이 “권리들의 실질적 평등이 존재”하고 “모

서울대 역사연구소 월례집담회 (2012년 10월 31일) 발표문을 참조하라.

85) B. Gainot, 1799, pp. 452~458.

86) Françoise Brunel, *Thermidor, la chute de Robespierre, 1794* (Bruxelles: Complexe, 1989), pp. 16~19.

87) *JDHL*, 혁명력 7년 맥월 5일(1799년 6월 23일).

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보호와 공평한 정의를 제공”하는 한에서만 정상 작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헌법이 이 평등을 견고하게 보증해야 한다”라고 믿었다.⁸⁸⁾

이처럼 헌법이 정치체의 구조를 보증하는 동시에 인민의 의지를 따르는 동적인 존재였으므로, 앙토넬은 국가의 주인이요 헌법의 작성자라 할 수 있는 인민이 수동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며 공공정신의 담지자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서 공공정신이란 그 근원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남에게도 해주는 역지사지의 정신과 동의어였다. 이것은 자연법의 원칙으로서, 혁명력 3년 헌법의 전문^{前文}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과 의무들의 선언」의 ‘의무’ 제2조에도 그대로 기입됐다.⁸⁹⁾ 그것은 공적 차원에서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뜻했고, 앙토넬은 그것을 튼튼한 공화국의 주춧돌로서 초들어 보였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을 확립하고 정의로운 법을 제정한 뒤 “모든 의지를 법에, 모든 법을 정치적 평등에 종속시키는 것”이야말로 엄밀하게 도덕적이고 정당한 권력이며 곧 정의라고 주장했다. 권리의 평등과 법이 정치적 정당성의 불가분한 구성요소가 된 것이다.⁹⁰⁾

공공정신이 숨쉬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활성화된 공공영역이 필요했다. 앙토넬의 논변에서 공공영역의 확립은 언론의 자유와 정치협회를 포함하는 평화로운 회합의 자유로 표상된다. 이와 같은 자유는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의 매개를 통해 공화국의 공공정신을 활성화시키며, 그것은 다시 과두정의 정신에 맞서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었다. 『자유인일보』의 집필진은 민주주의의 미래 희망을 무엇보다

88) *JDHL*, 혁명력 7년 무월 13일(1798년 11월 3일) - P. Serna, *Antonelle*, pp. 386~387에서 재인용.

89)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4), 2001.2, pp. 5~43.

90) *JDHL*, 혁명력 7년 맥월 21일(1799년 7월 9일).

다도 정치협회들의 재건에 걸었다.⁹¹⁾ 그래서 앙토넬은 공공영역과 정치협회를 무질서와 동일시하는 보수 공화파 및 왕당파에 맞서 “글과 말로써 토의할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가 가장 근본적인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가 1795년 헌법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헌법이 비록 자코뱅 클럽에 대한 공포를 담고 있음에도 제360~364조가 평화로운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총재정부는 정치협회들을 폐쇄하고 1798년에는 언론도 탄압했다. 때문에 『자유인일보』는 제호를 바꿔가며 지하에서 명맥을 이어나가야 했다. 따라서 민주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협회와 언론의 자유였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형성적 요소라서 총재정부가 싫어하며, 민주파는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다.⁹²⁾

앙토넬은 인민이 공적인 문제들을 두고 직접 토의하고 충돌하고 논쟁하고 반론을 펼치면서 눈을 밝힐 수 있는 곳은 정치협회뿐이므로, 정치협회를 통해 공공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변에서 인민은 정치협회에서 “학생이면서 교사”였고 “제자이면서 스승”이었다. 정치협회는 쉽게 결성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했다. 그는 정치협회에서 “특수의지들이 융해되고” 여론 *opinion publique*이 정교하

91) *JDHL*, 혁명력 7년 맥월 21일(1799년 7월 9일); R. Monnier, *L'espace public*, p. 226.

92) Antonelle, *Le Contraste de sentiments*, pp. 40~41; M. Fajn, *op. cit.*, pp. 87~98; B. Gainot, “La notion”, pp. 527~528; B. Gainot, 1799, p. 458; I. Woloch, *op. cit.*, p. 29. 세르나는 “Réal ou la république réaliste”, Michel Vovelle (dir.), *Le tournant de l'an III: réaction et terreur blanche dans la France révolutionnaire* (Paris: CTHS, 1997), pp. 233~235에서 로베스피에르 제거 이후 자코뱅 공화주의자 상당수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열월 반동 한 달 뒤, 레알(Pierre-François Réal)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처형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 어떠한 자유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언론의 자유가 혁명정부와 양립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혁명정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 다듬어지므로 그와 같은 “공화주의적 집회들을 빈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권리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협회와 같은 통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구성된 인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여론이나 일반의지를 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에게서 공공영역과 여론은 대의민주주의의 당당한 한 축이었으며, 그것들을 체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협회였다.⁹³⁾

여기까지 소개한 대의민주주의론을 정리해보자. 다수의 정치협회는 토의와 숙고를 통해서, 그리고 다수의 제1차 선거회는 보통선거로써 인민의 의지를 형성하고 표현한다. 선거는 입법권의 대표들과 집행권의 장관들을 결정하고, 그들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 헌법이 이 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증한다. 헌법은 곧 정부고, 법률은 곧 정부의 행위다.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인민은 법률에 대한 승인권을 통해 개입권 및 최종결정권을 보유한다. 이 관계망은 정치적으로는 입법권의 우위와 보통선거에 의해 중계되고, 사회적으로는 정치협회와 언론의 자유로 상징되는 공공영역과 여론으로 중계된다.

혁명력 2년 산악파와 비교해보면, 앙토넬은 대표들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인민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대했다. 동시에 그는 콩도르세의 정치적 구상을 대폭 수용했다. 콩도르세에게서처럼 앙토넬에게서도 대의민주주의란 풀뿌리 단계에서 참여와 토론이 인민의 자기교육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앙토넬은 정당한 대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대의제의 안정성을 모두 갖춘 정치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이도 있었다. 콩도르세는 인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계몽되기 전 상태의 인민을 불신했고 다수 “빈민의 전제”를 두려워했

93) *JDHL*, 혁명력 4년 중월 10일(1796년 3월 30일); R. Monnier, *L'espace public*, p. 227.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시민들이 비록 모든 문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지라도 좋은 대표자를 알아볼 역량과 어떤 법이 인간의 자연권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또 그는 지속적으로 재산 소유자만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1793년 헌법 초안에서는 남성보통선거를 규정했다.⁹⁴⁾ 그와 반대로 인민의 역량을 신뢰했던 앙토넬은 꾸준히 보통선거를 요구했다. 또 그는 인민이 제1차 선거회에서 숙의한 뒤 내린 결정을 신뢰해야 하며 그와 같은 결정들을 전적으로 불신한다면 인민이 뽑은 대표들도 올바르게 선출됐다고 믿을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했다.⁹⁵⁾

앙토넬의 의도는 총재정부 말기 그의 이론적 숙적이었던 시에예스의 그것과 판이하게 달랐다. 시에예스의 구상이 대의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사회적 분업’이라는 관념 위에 세워진 것과 반대로, 앙토넬에게서 정치적 대의는 일정 정도 민주주의 원칙을 대국에서 실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의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시에예스는 주권적 의지가 단일지점에 전적으로 귀속될 것을 꾸준히 주장했는데, 1789년부터 1799년까지 그의 논변이 지속적으로 보수화하는 중에도 단일성을 향한 이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국가의 이름으로 의지할 능력을 갖는 단 하나의 정치적 신체를 확립하려는 노력은 국민주권이라는 관념으로 응축됐다. 반대로 앙토넬은 결정의 여러 층위가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견제하면서 주권적 의지가 형성·결정·실현·변경되는 과정에 더 큰 비중을 뒀다. 그는 당대 현실에 참여하는 혁명가로서 민주주의가 정적인 제도 안으로 온전히 포섭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앙토넬은 이 민주주의

94) Condorcet, “Idées sur le despotisme”, p. 167; L. Jaume, *Le discours jacobin*, p. 310; Max M. Mintz, “Condorcet’s Reconsideration of America as a Model for Europe”,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Vol. 11, No. 4 (Winter, 1991), p. 503; D. Williams, *op. cit.*, pp. 172~174, 200~201.

95) Antonelle, *Le Contraste de sentiments*, pp. 36~40.

가 대의제라는 현실 정치체제 안에서 압살되지 않고 그 역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도를 고민했다.

제3절 민주성을 보장하는 장치

첫 번째 방도로서 앙토넬은 어떤 대표자의 직위도 종신직이어서는 안 되며, 대표자들이 인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인민이 대표자를 선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이 대표자를 가지면서도 주권자로 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의 위임은 언제나 조건부 위임이며, 무조건부 위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권자인 인민은 “행정관직을 창설하고 그것의 속성과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공공당국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게, 개인의 권리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압제를 휘두르지 못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공직자를 인민이 스스로 임명하거나 인민의 직접대리인들(délégués directs)이 임명할 때에만” 인민은 주권자로서의 “신성한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다. “행정관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인민만이 자신의 권능을 유지한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인민은 주권자가 아니게 되며 곧바로 인민이 아닌 신민이 되고 군중이 된다.⁹⁶⁾ 이 조건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앙토넬은 총재정부가 집행권의 강화를 위해 인민의 순응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집행권도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원칙이란 장관들이 정해진 임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선출돼야 하며 소환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장관들은 인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⁹⁷⁾

96) JDHL, 혁명력 7년 맥월 11일(1799년 6월 29일).

두 번째로 앙토넬은 큰 의회, 공개된 의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적 대의체로서 많은 수의 대표자로 구성되고 인민에게 공개된 의회가 프랑스를 통치했던 1789~1792년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말했다.⁹⁸⁾ 그는 프랑스 혁명, 고대 로마,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유의 본질적 원칙이 “전파^{expansion}”에 있는 반면 폭정의 원칙은 항상 제한된 내각 안에 권력을 집중시켜 밀실로 들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앙토넬은 “자유 유일한 보증은 그 수탁자의 수가 많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 고대사의 진정한 교훈이며 중국의 황제정치에서 볼 수 있듯이 “폭군의 수가 적을수록 폭정은 지속되기 쉽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작은 의회에서는 악이 협력자를 찾기 쉽”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된다. 그는 의회의 규모가 클수록 인민의 “자유를 침해하기보다는 보존하게 된다”라고 믿었다. 그는 의원 수가 600명은 넘어야 “공중의 감시를 벗어나 일반선^{bien général}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마련인 밀실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사한 이유에서 로베스피에르도 의회의 공개성을 주장했던 바 있다. 이미 1789년 8월에 파리 시장 바이이^{Jean-Sylvain Bailly}가 “공개성이 인민의 수호자”라고 선언했는데, 앙토넬은 똑같이 주장하면서 공개성이 1789년 혁명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혁명 초기부터 입법부의 활동은 공중에 공개되어 있었으며, 팝킨은 이 공개성의 원칙과 실천이 미국혁명과 다른 프랑스혁명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상원은 1795년까지 기자 출입을 불허했다. 앙토넬에게서 공화국의 권력자들을 쉬지 않고 감시하는 공개성은 “불 밝혀진 경계심”이자 “자유인들의 진정한 방패”였으며, 그것이 없다면 권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항상 부패로 귀결될 것”이었다.⁹⁹⁾ 그는 공개적

97) *JDHL*, 혁명력 4년 화월 6일(1796년 4월 25일).

98) *JDHL*, 혁명력 7년 맥월 6일(1799년 6월 24일).

의회정치가 군주정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서, 민주공화국에 고유한 것이라 주장했다. 앙토넬은 군주가 “오직 신민의 맹목적인 신뢰 속에서만 다스릴 수 있”으므로 “군주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군주제에서는 오히려 “군주야말로 신민을 항상 불신”하고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공화국에서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권한을 위탁한 자들을 불신하고 경계해야 하는 반면 수탁자들은 인민에 대해 무제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수탁자들의 정당한 힘과 권리는 오직 인민으로부터만 유래하기 때문이다.¹⁰⁰⁾

세 번째로 앙토넬은 헌법과 법률의 제정 과정에 인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토넬은 법이 정의를 담고 있어야 하며, 어떤 법률이 인민의 정서와 심각하게 대립하거나 상식적인 원칙들에 명백하게 어긋나면 그 법률은 주권의 표현이 아니라 법이라는 명칭에 대한 “모독”이 되며 공공질서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법률의 적절성 여부는 활성화된 공공영역에서의 토론으로써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총재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감시의 눈을 막는다며 『자유인일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청원권을 인정하고 제1차 선거회들이 일정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¹⁾ 다음 인용은 앙토넬이 민주주의를 대의제와 결합시킨 양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다.

인민이 모든 법에 대해 자신의 진정한 인감을 찍어주는 관계에서만, 인민은 법률상 *de droit* 으로뿐 아니라 사실상 *de fait* 으

99) *JDHL*, 혁명력 7년 맥월 10일(1799년 6월 28일); 민석홍, 『서양근대사연구』 (일조각, 1975), pp. 228~229; J. D. Popkin, *Revolutionary News*, pp. 2~3.

100) *JDHL*, 혁명력 7년 맥월 10일(1799년 6월 28일).

101) *JDHL*, 혁명력 7년 맥월 15일(1799년 7월 3일).

로도 주권자이다. 인민이 임기를 갖는 대표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위임해버린 뒤라 할지라도, 인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치거나 권리들을 침해하는 모든 법을 거부할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한에서는 인민은 여전히 법률상·사실상 주권자이다.¹⁰²⁾

앙토넬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 자체를 통제하는 권리에서 주권의 실체를 발견했다. “주권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는 대의제에서 인민이 법적으로 주권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주권자가 아니라고 믿었다. 입법에 대한 인민의 직접적 개입은 그의 “대의민주주의”의 뼈대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는 루소와 마찬가지로 인민이 법률상으로는나 사실상으로는나 양도 불가능한 주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담지자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1차 선거회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렇지 않고 통치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인민은 앙토넬에 따르면 “계엄 상태^{état de siège}에 처해 있는 것”이며 “비열하게도 인민 자신의 이름으로 다뤄지고 통치당하도록 저주받은 것”이었다.¹⁰³⁾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 구상은 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불신에 기초했으며, 이 점에서 로베스피에르 및 콩도르세의 그것과 닮았다. 앙토넬이 볼 때에도 분명히 대표자들의 의지는 일정 정도 일반의지의 모색이자 체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수많은 결사체들의 총체에 비하면 언제나 상대적으로 하나의 특수의지에 불과”한

102) *JDHL*, 혁명력 7년 맥월 11일(1799년 6월 29일).

103) *JDHL*, 혁명력 7년 맥월 15일(1799년 7월 3일).

데도 그 총체의 개입 없이 법률이 되어버리는데, 인민은 그렇게 제정된 법률을 승인하지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무기한 종속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¹⁰⁴⁾ 그래서 대의제가 민주적이라면 법제 과정에 대한 접근권을 인민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최고 대의체가 제정한 법률은 제1차 선거회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루소는 주권자가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져야 주권의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앙토넬은 이 원칙을 대의제에 삽입해서 대의제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견제의 축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단, 그는 침묵은 무언의 승인으로 간주된다고 말한 루소와 달리 제1차 선거회들이 일정한 주기마다 법률들을 적극적으로 승인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법률들이 암묵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수의 제1차 선거회들이 법률 폐지 여부를 묻는 전국단위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논의하지 않았다.¹⁰⁵⁾

이 논변은 1793년 헌법 작성과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산악파 헌법’보다 콩도르세가 작성한 ‘지롱드 초안’의 정신을 더 많이 참조했다. 앙토넬과 콩도르세 사이의 이런 유사성은 혁명기 정치사상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끔 만든다. 세르나는 총재정부기 “가장 급진적인 민주주의 기획이 콩도르세의 사유와 글의 유산 위에 세워졌던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코뱅을 지롱드파와 산악파로 이분하고 콩도르세를 로베스피에르와 대립시키는 역사서술의 단순성을 비판한다. 게노는 “자코뱅은 산악파의 적자이고 보수적 자유주의는 지롱드파의 적자라는 식의 장자상속적 서술”을 진부하다고 평하면서 신자코뱅이 공포정치기의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민주정부가 아닌 좀 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콩도르세의 유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¹⁰⁶⁾

104) *JDHL*, 혁명력 7년 맥월 16일(1799년 7월 4일).

105) Rousseau, *op. cit.*, pp. 116, 131.

네 번째로 앙토넬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에서는 평등 위에 질서를 정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의 상호 지탱을 확보하려 했다.¹⁰⁷⁾ 그는 총재정부기 프랑스 사회의 뚜렷한 빈부 대조와 극심하게 변동하는 재산소유 관계가 제한선거를 규정한 헌법과 결합해서 정치적 평등을 침식하고 실질적인 권리의 평등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재산의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재산상속이 그것을 가중시켜서 정도가 극심해지면 법 앞의 평등조차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의 배경과 교육 기회의 평등은 법적·정치적 평등이 허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을 막는 보루로서 도입됐다.¹⁰⁸⁾ 이는 재산과 직업의 불평등이 정치적 평등을 전혀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시에예스의 주장에 대립하는 것으로, 과도한 불평등을 경계하면서 “실제의 사정이 끊임없이 평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평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루소와 1791년 4월 5일 연설에서 재산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로베스피에르를 따른 것이다.¹⁰⁹⁾

그런데 앙토넬은 사회경제적 평등을 신장시킬 방편으로 재산 재분배가 아닌 보편적 교육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운

106) B. Gainot, “La réception de Condorcet dans les milieux néo-jacobins”, Anne-Marie Chouillet & Pierre Crépel (dir.), *Condorcet: homme des Lumières et de la Révolution* (Paris: Ophrys, 1997), pp. 263~270; R. Monnier, “‘Démocratie représentative’ ou ‘république démocratique’: de la querelle des mots (République) à la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25 (juillet-septembre 2001), p. 3; P. Serna, *Antonelle*, 294.

107) Antonelle, *Le Contraste de sentiments*, pp. 36~40.

108) *JDHL*, 혁명력 7년 맥월 20일(1799년 7월 8일).

109) Rousseau, *op. cit.*, p. 72; Sieyès, *op. cit.*, p. 129;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1787 à 1799) tome XXIV,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du 10 mars au 12 avril 1791* (Paris: Paul Dupont, 1875~1889), pp. 562~564.

광을 그리지는 않았으며 교육혜택을 전체 인민으로 확대할 것만을 요구했다. 총재정부는 산악과의 보편적 무상교육 원칙을 버리고 선별적 유상교육으로 선회했으며 초등교육보다는 전문학교와 엘리트 교육에 힘을 쏟았다. 1795년 10월 25일 이른바 도누 법안은 학교가 코뮌마다가 아닌 면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고 소녀들은 별도의 학교에서 “유용한 기술들”을 배워야 하며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교사 봉급을 충당한다고 규정했다. 많은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문을 닫았다.¹¹⁰⁾ 이에 맞서 앙토넬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 투표권이 없는 성인 비유권자에 대한 교육, 정치 협회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치적 학습을 요구했다. 획일성이 아닌 평등을 추구하는, 콩도르세를 연상시키는 교육제도와 여론을 통해 인민은 눈을 뜨고 각자의 재능이 공동의 이익으로 열매 맺게 할 것이었다. 교육은 “불평등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것이었다.¹¹¹⁾ 그는 종교적 감수성과 결별하지 못한 18세기 담론 속의 공화주의적 덕성이 아니라 인민의 선한 본성과 제1차 선거회에서의 토론 및 공교육의 계몽적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에, 루소나 로베스피에르와 달리 공화국의 지탱 요소로서 시민종교를 정치논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는 콩도르세나 시에예스의 세속적인 정교분리 감수성에 더 근접해 있다.

110) Georges Lefebvre, *La France sous le Directoire, 1795~1799* (Paris: Éditions sociales, 1984), pp. 559~568; Peter McPhee, *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157~158.

111) P. Serna, *Antonelle*, pp. 290~292.

V. 결론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살펴봄으로써 열월 9일에 정치를 ‘정상화’하려 했으나 정권에서 퇴출당한 총재정부기 자코뱅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대안을 가늠해볼 수 있고, 프랑스혁명의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신자코뱅은 기존 헌정 틀 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회 안팎에서 운동을 전개했다. 혁명의 민주적 가능성은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처형되지도 않았고 혁명력 3년 종월과 목월의 마지막 민중봉기와 함께 짓밟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총재정부기에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앙토넬은 무^후에서 유^후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혁명기 민주주의와 대의제 담론의 다양한 변형체들을 전유해서 총재정부기 신자코뱅주의를 주도한 이론적 구축물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헌법 초안처럼 정치한 기획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으며, 심원한 철학적 사유의 전개에 토대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흑인노예나 여성의 문제를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 또 그것은 인민의 의지를 확인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정치사상이 어디까지나 뚜렷하게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급박한 이론적 타협으로서, 공포정치로 돌아가지도 않고 바뵈프의 공산주의적 기획을 따르지도 않는 동시에 보수화하는 혁명의 활력을 되살려내고 공화국을 민주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과 불가분으로 연결된 채로 형성되고 다듬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은 여전히 하나의 이론으로서 상당한 뼈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교화 작업을 거친다면 혁명기 다른 헌법들에 뒤지지 않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그것은 정치적 신체로서의 인민과 한 무리의 군중으로서의 인민을 구분했고, 시민적 자유를 누리는 개

인들의 계약으로서 주권을 사유했다. 또 그것은 헌법이 인민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구속하는 형식적 틀인 동시에 공공영역의 활성화와 시민 교육을 보장하고 인민주권을 지켜주는 보루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파했고, 그와 같은 인식 위에서 민중봉기가 아닌 선거운동과 개헌을 통한 개혁을 주창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보통선거와 지속적인 감시 및 변경 가능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파악함으로써 자코뱅주의를 정치적 다원주의에 접근시켰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총재정부기 민주공화국과 인사들에게서 전략적 도구로 채택됨으로써 ‘공포정치’와 ‘보수 공화국’ 양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뚜렷하게 현실적인 정치이론으로 인정받았다.

앙토넬은 언론 및 평화로운 결사의 무제한적인 자유와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혁명력 2년의 산악파 정책과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총재정부가 혁명력 2년에 비해서 결코 더 안정적이지 않았고 안팎의 위기가 상존했음을 고려하면 실로 급진적인 요구였다. 산악파와 신자코뱅이 공히 루소의 인민주권론을 혁명기 프랑스의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 했다면, 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산악파는 준동하는 파리 민중의 요구를 피부로 느끼는 동시에 열강과의 전쟁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전시정부를 운영했다. 그래서 혁명 수호와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국민공회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해야 했다. 그와 달리 신자코뱅은 민중의 열기가 식고 혁명전쟁이 팽창전쟁이 되고 보수적 부르주아 공화국이 결정화되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 공화국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의 입장에서 제1차 선거회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려 했다. 필시 민주파 혁명가들이 처한 상황의 차이가 그들의 일차적 목표의 차이를 낳았고,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대의민주주의론이 탄생했다. 정치사상에서 콩도르세와 지롱드파를 동일시하거나 로베스피에르와 산악파 또는 혁명력 2년의 공

안위위원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곧 역사적 격변기의 요동치는 사유를 이분법적이고 정태적인 서술에 가두는 것이다. 콩도르세, 로베스피에르, 앙토넬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다른 결정들을 내렸지만 인민의 주권과 대의제에 대한 그들의 사유에는 일정한 공통점도 있었다.

혁명이 제시한 정치적 전망은 인민주권 및 직접민주주의라는 기등과 대의제 및 자유주의라는 기등으로 단순하게 이분할 수 없다. 두 기등 사이에는 현실적이고 세련되면서도 역사적 대격변의 역동성과 실험성을 간직한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했다. 그 다양한 판본들을 혁명적 경험 속에서 혼합적으로 전유한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은 이론적 깊이에서나 당대 운동에 행사한 지도력에서나 빼어난 판본이었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 총재정부기가 결코 정치사상의 불모기가 아니라 풍부한 논쟁과 생산의 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48년 프랑스 제2공화정의 ‘민주사회파^{démoc-socs}’와 1870년 제3공화정의 ‘급진공화파^{républicains radicaux}’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민주권, 보통선거, 법적·정치적 평등, 자유로운 회합 및 결사, 언론의 자유, 보편적 공교육으로 구성된 앙토넬의 ‘민주공화국’ 기획의 향적을 발견할 수 있다.¹¹²⁾ ‘대의민주주의’가 19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의 관념으로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와 같은 설명은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썬에 넣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민주적 기획으로서의 단일한 ‘대의민주주의’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민주적 ‘대의민주주의’ 기획과 반민주적 ‘대의민주주의’ 기획이 공존했음을 인지하고 양자 간의 갈등관계를 사유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은 이

112) 제2공화정과 제3공화정의 급진적 공화주의 기획에 대해서는 각각 김인중, 「공화주의, 자유주의, 1848혁명」, 프랑스사학회, *op. cit.*, pp. 96-99와 민유기, 「공화주의와 사회개혁 - 20세기 전환기 급진당의 성과와 한계」, 프랑스사학회, *op. cit.*, pp. 107, 118-134를 참조하라.

런 사유의 재료로서도 가치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혁명기 ‘대의제 정부론’과 보통선거를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19세기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 인민에게 입법 과정 통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대의민주주의 기획의 원류로 자리매김할 만하다. 덧붙여, 오늘날 정적인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대의제의 문제를 단순히 엘리트의 지배 또는 직접민주주의 중 한 쪽을 요구함으로써 타결할 수 없는 만큼,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은 다시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Nouveau pacte social, présenté au nom du comité de constitution par Condorcet à la Convention nationale, les 15 et 16 février 1793 (ou Constitution girondine)

La Constitution du 24 juin 1793 ou Constitution de l'an I

La Constitution du 5 fructidor an III (22 août 1795)

Journal des Hommes Libres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1787 à 1799) tome XXIV,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du 10 mars au 12 avril 1791, imprimé par ordre du Sénat et de la Chambre des députés, sous la direction de M. J. Mavidal & de M. E. Laurent, Paris: Paul Dupont, 1875~1889.

Antonelle, Pierre-Antoine. *Catéchisme du tiers état, à l'usage de toutes les provinces de France, et spécialement de la Provence*, 1788.

_____, *Le Contraste de sentimens, ou le citoyen Delacroix en présence d'un démocrate*, Paris: R. Vatar, 1795.

_____, *La Constitution et les principes opposés aux Floréalistes*, 1798.

Bach, Victor, *Premier discours du citoyen Bach, à la réunion séant au Manège, sur les moyens de consolider la République*, Paris: chez l'Auteur, l'imprimerie de Benoist, 1799.

Condorcet, Jean-Antoine-Nicolas de Caritat. "Idées sur le despotisme, à l'usage de ceux qui prononcent ce mot sans l'entendre", *Œuvres de*

- Condorcet*, tome 9e, Paris: Firmin Didot frères, impr. de l'Institut, 1847.
- _____,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장세룡 옮김, 책 세상, 2002.
- Paine, Thomas. *Rights of Man, Common Sense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Rousseau, Jean-Jacques. 『사회계약론(외)』, 이태일(외) 옮김, 범우사, 2002.
- Sieyès, Emmanuel Joseph.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박인수 옮김, 책 세상, 2009.

2차 자료

- 김인중. 「공화주의, 자유주의, 1848혁명」, 이용재·박단 외, 『프랑스의 열정 : 공화국과 공화주의』, 아카넷, 2011, pp. 79~101.
- 민석홍. 『서양근대사연구』, 일조각, 1975.
- 민유기. 「공화주의와 사회개혁 - 20세기 전환기 급진당의 성과와 한계」, 이용재·박단 외, 『프랑스의 열정 : 공화국과 공화주의』, 아카넷, 2011, pp. 105~134.
- 박윤덕. 「프랑스혁명 전야의 팸플릿 전쟁」,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22), 2010.2, pp. 67~99.
- 양희영. 「프랑스 혁명과 공화국의 탄생」,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21), 2009.8, pp. 27~51.
-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4), 2001.2, pp. 5~43.
- _____.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프랑스대혁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3(2), 2003.10,

pp. 5~65.

_____. 「공화국, 공화주의, 프랑스」, 이용재·박단 외, 『프랑스의 열정 : 공화국과 공화주의』, 아카넷, 2011, pp. 19~52.

_____. 「서양의 민주주의 - 이념과 변용」, 제55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속의 민주주의’ 한국과학기술원, 2012년 10월 26일 발표문.

_____. 「루소와 프랑스혁명」, 서울대 역사연구소 월례집담회 2012년 10월 31일 발표문.

Achorn, Erik. “Bernadotte or Bonapart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1, No. 3 (Sep., 1929), pp. 378~399.

Arnault, Antoine Vincent, Étienne-François Bazot, Antoine Jay, Étienne de Jouy & Jacques Marquet de Montbreton Norvins. “Antonelle”, *Biographie nouvelle des contemporains ou Dictionnaire historique et raisonné...*, Paris: Librairie historique, 1820.

Aulard, François-Alphonse. *Histoire pol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origines et développement de la de démocratie et la république, 1789~1804*, Paris: Armand Colin, 1909.

Baker, Keith Michael. *Inventing the French Revolution: Essays on French Political Cul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Bastid, Paul. *Sieyès et sa pensée*, Genève: Slatkine Reprints, 1978.

Biard, Michel & Pascal Dupuy. *La Révolution française: Dynamiques, influences, débats 1787~1804*, Paris: Armand Colin, 2004.

Brown, Howard G.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violence, justice, and repression from the terror to Napoleon*, Charlottesville &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Brunel, Françoise. *Thermidor, la chute de Robespierre, 1794*, Bruxelles: Complexe, 1989.

- Canovan, Margaret. *The People*, Cambridge: Polity, 2005.
- Cobb, Richard. *Terreur et subsistances, 1793~1795*, Paris: Librairie Clavreuil, 1965.
- Crook, Malcolm. *Elections in the French Revolution: Apprenticeship in Democracy, 1789~17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Dommanget, Maurice. *Babeuf et la conjuration des Égaux*, 2e édition, Paris: Spartacus, 1989.
- Dorigny, Marcel & Bernard Gaino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9: contribution à l'histo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Éditions UNESCO, 1998.
- Fajn, Max. *The Journal des Hommes Libres de Tous les Pays, 1792~1800*, The Hague & Paris: Mouton, 1975.
- Gainot, Bernard. "La notion d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e legs néo-jacobin de 1799", Michel Vovelle (dir.), *L'imag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communications présentées lors du Congrès mondial pour le bicentenaire de la Révolution, Sorbonne, Paris, 6-12 juillet 1989*, vol. 1, Paris and New York: Pergamon Press, 1989.
- _____. "La réception de Condorcet dans les milieux néo-jacobins", Anne-Marie Chouillet et Pierre Crépel (dir.), *Condorcet: homme des Lumières et de la Révolution: Colloque 'Recherches nouvelles sur Condorcet' à Paris les 7 et 8 octobre 1994*, Paris: Ophrys, 1997.
- _____. "Un itinéraire démocratique post-thermidorien: Bernard Metge", Christine Le Bozec et Eric Wauters (ed.), *Pour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hommage à Claude Mazauric*, Rouen: I.R.E.D. - C.R.H.C.T., 1998, pp. 93~106.
- _____. "La Nation d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t son occultation",

- The European Legacy: Toward New Paradigms*, 4:6 (1999), pp. 84~91.
- _____. *1799, un nouveau Jacobinism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une alternative à brumaire*, Paris: Comité des travaux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2001.
- _____. “La République comme association de citoyens solidaires. Pour retrouver l’économie politique républicaine (1792~1799)”, IHRF,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 Gauthier, Florence. *Triomphe et mort du droit naturel en Révolution: 1789~1795~1802*,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 _____. “The French Revolution: Revolu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Mike Haynes & Jim Wolfreys (ed.), *History and Revolution*, London: Verso, 2007.
- Hobson, Christopher. “Revolution, Representation and the Foundations of Modern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July, 2008.
- Hunt, Lynn, David Lansky & Paul Hanson. “The Failure of the Liberal Republic in France, 1795~1799: The Road to Brumaire”, T. C. W. Blanning (ed.), *The Rise and Fall of the French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Jaume, Lucien. *Le discours jacobin et la démocratie*, Paris: Fayard, 1989.
- _____. *Échec au libéralisme: les Jacobins et l’État*, Paris: Éditions Kimé, 1990.
- Jennings, Jeremy. *Revolution and the Republic: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France since the Eighteenth-Centur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Lefebvre, Georges. *La France sous le Directoire, 1795~1799*, Paris: Messidor/Éditions sociales, 1984.
- Livesey, James. *Making Democracy in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Lucas, Colin. “The First Directory and the Rule of Law”,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0, No. 2, Autumn, 1977.
- _____. “The Rules of the Game in Local Politics under the Directory”,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6, No. 2, Autumn, 1989, pp. 345~371.
- Lyons, Martyn. *France Under the Direc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Manent, Pierre. *Cours familier de philosophie politique*, Paris: Gallimard, 2004.
- Manin, Bernard. *Principes du gouvernement représentatif*, Paris: Flammarion, 2008.
- McPhee, Peter. *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Monnier, Raymonde. *L'espace public démocratique: essai sur l'opinion à Paris de la Révolution au Directoire*, Paris: Éditions Kimé, 1994.
- _____. “‘Démocratie représentative’ ou ‘république démocratique’: de la querelle des mots (République) à la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25, juillet-septembre 2001.
- _____. *Républicanisme, Patriotisme et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Harmattan, 2005.
- Martin, Jean-Clément. “Violence/s et R/révolution, les raisons d'un malentendu”, Michel Biard (dir.), *La Révolution française: une*

- histoire toujours vivante*, Paris: Tallandier, 2009.
- Mintz, Max M. “Condorcet’s Reconsideration of America as a Model for Europe”,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Vol. 11, No. 4, Winter, 1991.
- Palmer, Robert Roswell. *Twelve Who Ruled: the Year of the Terror in the French Revolu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1.
- _____. *The Age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a Political History of Europe and America, 1760~1800*, vol. 2, *The Strugg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Pasquino, Pasquale. *Sieyès et l’invention de la constitution en France*, Paris: O. Jacob, 1998.
- Pingué, Danièle. “Les sociétés politiques: des laboratoires de démocratie”, Michel Biard (dir.), *La Révolution française: une histoire toujours vivante*, Paris: Tallandier, 2009, pp. 95~106.
- Pitkin, Hanna Fenichel.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Popkin, Jeremy D. *The Right-Wing Press in France, 1792~180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 _____. *Revolutionary News: the Press in France, 1789~1799*,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0.
- Robert, Adolphe & Gaston Cougny. *Dictionnaire des parlementaires français de 1789 à 1889*, tome 1, Paris: Bourloton, 1889.
- Rosanvallon, Pierre. “L’histoire du mot démocratie à l’époque moderne”, Marcel Gauchet, Pierre Manent et Pierre Rosanvallon (dir.), *Situations de la démocratie*, Paris: Seuil-Gallimard, 1993, pp. 11~29.
- _____. *La démocratie inachevée: histoire de la souveraineté du peuple en France*, Paris: Gallimard, 2000.

- _____. *Le modèle politique français: la société civile contre le jacobinisme de 1789 à nos jours*, Paris: Seuil, 2004.
- Rothschild, Emma. "Condorcet and the Conflict of Values", *The Historical Journal*, Vol. 39, No. 3, Sep., 1996, pp. 677~701.
- Serna, Pierre. *Antonelle: Aristocrate révolutionnaire 1747~1817*, Paris: Le Félin, 1997.
- _____. "Réal ou la république réaliste", Michel Vovelle (dir.), *Le tournant de l'an III: réaction et terreur blanche dans la France révolutionnaire*, Paris: Comité des travaux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1997, pp. 231~245.
- _____. *La république des girouettes*, Paris: Champ Vallon, 2005.
- _____. "Français, encore un effort pour être républicains!", Michel Biard (dir.), *La Révolution française: une histoire toujours vivante*, Paris: Tallandier, 2009, pp. 65~79.
- _____. "La République, une «anomalie» ... à construire", *Conférence à la Maison Franco-Japonnaise, le 28 septembre 2009*, Working paper - Série C: Conférences.
- Sewell, William H. *A Rhetoric of Bourgeois Revolution: the Abbé Sieyès and What is the Third Estat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4.
- Tackett, Timothy. *When the King Took Fligh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Troper, Michel. "La constitution de l'an III ou la continuité: la souveraineté populaire sous la Convention", Roger Dupuy & Marcel Morabito (dir.), *1795. Pour une République sans Révolution, actes du colloque de Rennes 1995*,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1996.

- Tyrsenko, Andreï. “L’ordre politique chez Sieyès en l’an III”,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janvier-mars, 2000.
- Urbinati, Nadia. *Representative Democracy: Principles and Genea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 Vieira, Mónica Brito & David Runciman. *Representation*, Cambridge: Polity, 2008.
- Vovelle, Michel. *Les Jacobins: de Robespierre à Chevènement*, Paris: La Découverte, 2001.
- Wartelle, François. “Antonelle”, Albert Soboul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rééd. Quadrige, 2005.
- Williams, David. *Condorcet and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Williams, David Lay. *Rousseau’s Platonic Enlightenment*,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7.
- Woloch, Isser. *Jacobin Legacy: The Democratic Movement Under the Directory*,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Young, H. P. “Condorcet’s Theory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No. 4, December, 1988.

Résumé

Antonelle et sa théori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pendant le Directoire

Minchul Kim

Les recherches sur les idées politiques modernes divisent les théories politiques de la périod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deux catégories distinctes : la «souveraineté du peuple» et le «gouvernement représentatif». Jusqu'à la fin du XVIIIe siècle, le mot «démocratie» désigne une petite république en démocratie directe. Il était jugé inapplicable aux grands pays, où au mieux seul le gouvernement représentatif serait possible. Les recherches soutiennent qu'une idée viabl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comme la solution à la séparation mentionnée ci-dessus n'est apparue qu'après le milieu du XIXe siècle, après l'échec du compromis pendant la Révolution.

Pourtant, cette description doit beaucoup à la négligence de la période directoriale de 1795 à 1799. L'historiographie tend à sauter la période tout à fait, et à la considérer comme une période médiocre de réaction remplie d'échecs embarrassants. En effet, Pierre-Antoine Antonelle, l'homme de la théorie des néo-jacobins pendant le Directoire, a présenté un projet théorique et pratiqu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dans ses pamphlets et ses articles du *Journal des*

Hommes Libres. Né du contexte historique de la période directoriale, ce projet était une tentative de surmonter la séparation de la «démocratie» et la «représentation», en essayant d'éviter à la fois la Terreur de l'an II et le conservatisme réactionnaire des tendances semi-royalistes de la nouvelle république bourgeoise. Il s'adresse à un compromis unique, différent de la théorie de la souveraineté populaire des premières années révolutionnaires, et à la fois différent de la théorie du gouvernement représentatif qu'incarne Sieyès.

Antonelle a formulé une conception d'une république démocratique gouvernée par les lois, où le peuple conserve effectivement sa souveraineté, et où un ensemble de mécanismes démocratiques comme le suffrage universel et la liberté de la presse est mis en pratique. En analysant sa pensée, on peut comprendre l'alternative politique que poursuivent les néo-jacobins, et aussi on peut voir la richess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Les idées politiques d'Antonelle se fondent sur son appropriation des diverses formes de discours sur la démocratie et la représentation de la période révolutionnaire. Ce mémoire de maîtrise donc le met dans le contexte des événements et des débats contemporains, et ainsi imagine sa pensée au sein de son expérience révolutionnaire.

Ce texte se constitue de trois parties. La première partie explique le cadre historique et biographique. Puis la deuxième partie examine la tension et le conflit entre les idées de démocratie et de représentation de 1789 à 1794. La troisième partie discute du projet théoriqu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qu'était le point culminant unique des idées de la démocratie et du gouvernement représentatif pendant la Révolution, combiné avec la tradition du républicanisme qui avait existé en France depuis au moins deux cents ans.

Après l'analyse de la théori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je

soutiens que, malgré ses limites, elle a une structure assez éloquente, lorsqu'elle est un projet de politique pratique. Je soutiens aussi qu'elle a des potentialités, si elle gagne un peu d'élaboration, pour se matérialiser en une constitution démocratique moderne.

La pensée politique néo-jacobine d'Antonelle a aussi une signification historique : les «démoc-socs» de la Seconde République et les «républicains radicaux»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sont dans son sillage, en intégrant la souveraineté du peuple, le suffrage universel, l'égalité juridique et politique, la liberté de réunion et d'association, la liberté de la presse et l'éducation publique laïque à leurs projets. Il faut considérer sa pensée comme une source d'une idée véritablement démocratiqu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qui invite les citoyens eux-mêmes à participer au processus législatif et qui s'oppose à ce qui est généralement perçu comm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ibérale de la XIXe siècle qui est plutôt une simple combinaison du gouvernement représentatif proposé par Sieyès et le suffrage universel.

Dans le dynamisme qu'est la démocratie, l'inquiétude suscitée par les représentants élus ne se réduit pas à une simple question de choix entre le règne des notables et la démocratie directe. D'où la pertinence d'Antonelle et de sa pensée aujourd'hui.

mots clés : Révolution française, Directoire, Antonelle, démocratie, représentation, souveraineté du peuple

Numéro d'identification d'étudiant : 2011-20055